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Apr. 2019
Vol. 28

4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과 시사점

재정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재정 칼럼

재정분권시대 지방교부세제도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의의 및 현황과 개선과제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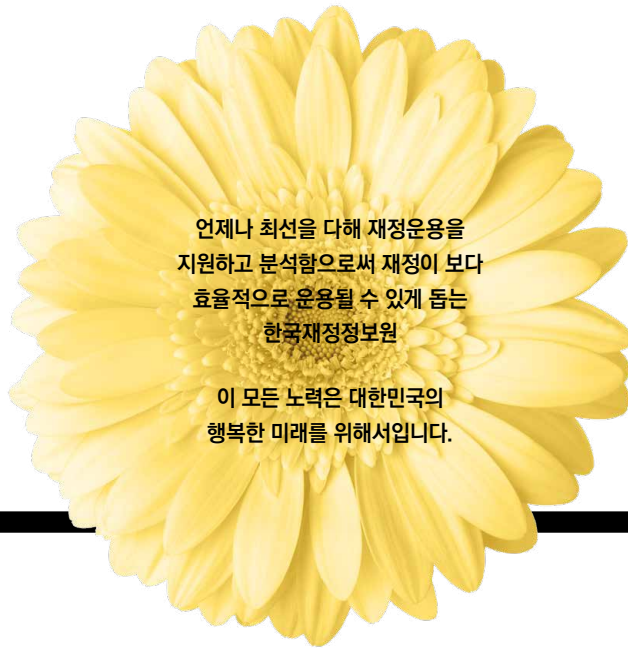
재정 Talk Talk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분석함으로써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돕는
한국재정정보원

이 모든 노력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미래 디자이너’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한국재정정보원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활용부(02-6908-8583)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02-786-2999)

재정
INSIGHT

- 04 KPFIS 인사이드
- ①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과 시사점
김명규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② 재정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정주호 정보보호본부 과장

- 22 재정 칼럼
- ① 재정분권시대 지방교부세제도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②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의의 및
현황과 개선과제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32 톺아보기
-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
NOW

- 34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
- ① 최근 재정통계
 - ② 분야별 통계 : 과학기술
- 48 키워드 재정
- 이달의 이슈 키워드 : 독립운동
- 52 해외재정동향
- OECD 회원국의 차입 추이 및 전망 :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

재정
STORY

- 56 이달의 재정 이야기
- 2018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자 인터뷰
- 60 재정 Talk Talk
- 재정수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62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 조선에도 파산제도가 있었다?
- 66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 ‘선량한 정책의도’와 ‘더딘 재정발달’의
딜레마에 처했던 조선
- 70 KPFIS의 서재
- 72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1

KPFIS-인사이드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과 시사점

김명규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mkim@kpfis.kr)

국민 효용 증진을 위해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임무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한정된 자원하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적재 적소에 제공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 주요 공공서비스 중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의 확충은 정부재원만으로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민간주체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후자의 방식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은 도로, 체육시설, 철도, 학교, 복지시설 등 SOC 사업에 대해 정부가 고시하거나 민간이 제안하는 민·관 공동 투자사업이며, 2017년 기준 4.1조 원 규모였다. SOC 예산이 2010년 25.1조 원에서 2019년 19.8조 원으로 연평균 2.6%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필수적인 공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도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포괄적으로 선정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에 최근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요 정책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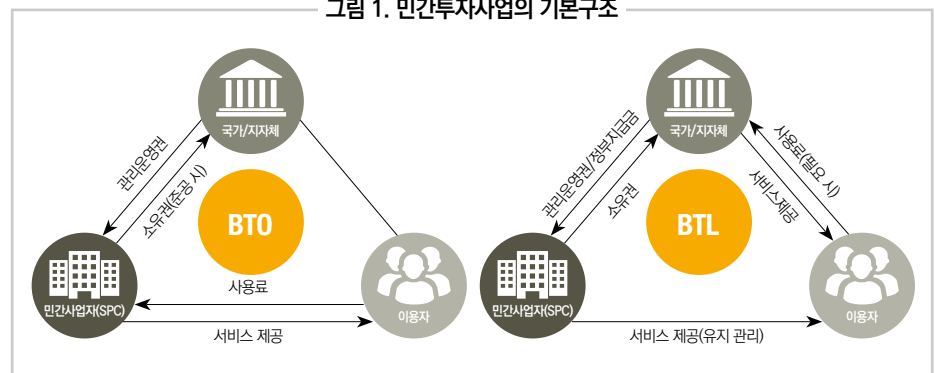
●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및 종류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서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에 따라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추진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t-Transfer-Operate)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t-Transfer-Lease)로 크게 구분되며, 건설-운영-이전(BOT; Built-Operate-Transfer), 건설-소유-운영(BOO; Built-Own-Operate)과 같은 조달 방식도 존재한다.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완공과 동시에 정부로 이전되고,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교통시설이 주를 이룬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완공과 동시에 정부로 이전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정부로부터 관리운영권을 획득한 후 운영수입과 정부로부터 받는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학교, 복지시설, 환경시설, 군주거시설 등이 주를 이룬다. BOT(건설-운영-이전)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고, BOO(건설-소유-운영) 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완공과 동시에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림 1.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구조



자료: 기획재정부·KDI(2015)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을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에서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추진하는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투자 적격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민간투자 적격성조사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 판단',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 '민간투자 실행대안 구축'에 대해 분석¹하는 것이다.

02

● 민간투자사업의 운영현황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총 719개 사업을 추진(준비 중인 사업포함)하였으며, 총 114.5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242개로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의 33.7%를 차지하지만, 투자비는 82.6조 원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할 정도로 사업의 평균 규모가 3,413억 원으로 임대형 민자사업(BTL)보다 크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477개 사업에 31.9조 원이 투입되었으며, 평균 규모는 669억 원이다. 사업의 평균 규모로 비교하면,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임대형 민자사업(BTL)보다 약 5.1배 많은 수준이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대규모 교통시설이 주를 이루고,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학교, 국방, 복지시설 등과 같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4년부터 2017년까지의 민간투자비(누계)는 87.0조 원으로 민간투자사업 총투자비(누계) 114.5조 원의 76.0%를 차지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건설보조금과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민간투자비(97.5%)로 추진되는 특징이 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가 큰 도로, 철도 등과 같은 사업 중심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투자 비율이 67.7%로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표 1.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비 실적(누계) : 1994~2017년

(단위: 개, 조 원)

구분	사업수					투자비			
	합계	운영중	시공중	준비중	종료	민간 투자비	건설 보조금	토지 보상비	합계
BTO	242	192	28	9	13	55.9	18.1	8.6	82.6
BTL	477	451	24	2	0	31.1	0.2	0.6	31.9
합계	719	643	52	11	13	87.0	18.3	9.2	114.5

자료: 기획재정부(2018)

¹ 사업추진의 타당성 판단은 예비타당성조사 혹은 타당성조사와 유사한 성격으로 제안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투자 적격성 판단은 해당사업을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의 투자가치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민간투자실행대안 구축은 민간투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1).

2017년 기준으로 민간투자사업은 준비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총 84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중 수익형 민자사업(BTO)은 48개,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36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84개 사업 중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29개 사업이며, 시공 중인 사업은 51개 사업이다. 2017년 민간투자사업비 합계는 5.1조 원으로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3.6조 원,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1.5조 원이다. 총 사업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투자액 비중은 74.5% 수준이다.

표 2. 2017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 현황

(단위: 개, 조 원)

구분	사업 수				투자비			
	합계	운영 중	시공 중	준비 중	민간 투자비	건설 보조금	토지 보상비	합계
BTO	48	17	27	4	2.4	0.5	0.8	3.6
BTL	36	12	24	0	1.4	0.0	0.03	1.5
합계	84	29	51	4	3.8	0.5	0.8	5.1

자료: 기획재정부(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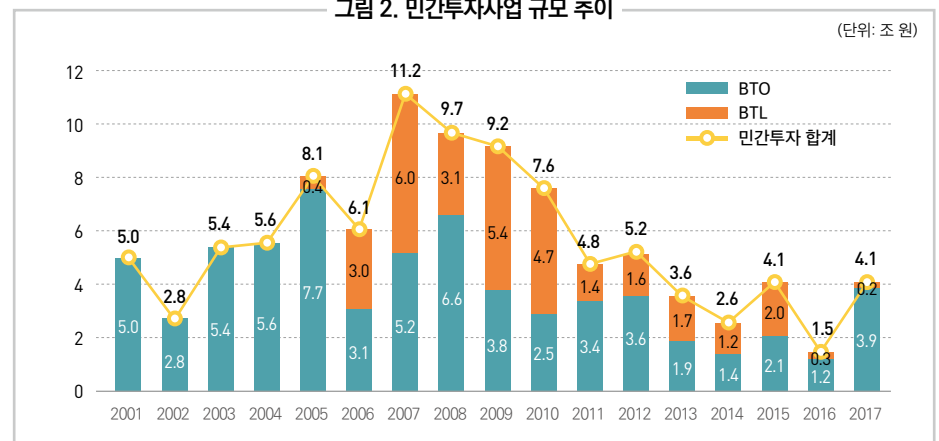
03

● 민간투자사업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민간투자사업의 연도별 투자금액 추이를 보면, 2001년 5.0조 원에서 2007년 11.2조 원까지 확대된 이후 연도별로 다소의 등락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은 1.5조 원 투자하는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2017년은 4.1조 원으로 전년 대비 2.6조 원 증가하였다.

그림 2. 민간투자사업 규모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이러한 추세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제도의 축소·폐지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시작하였으나,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요 추정으로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최소운영수입의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가 있다². 이러한 이유로 최소운영수입보장 신규사업은 2007년 이후 시행하지 않았으며, 2009년부터는 제도를 완전 폐지하였다. 2017년 기준 운영 중인 최소운영수입보장 대상 사업은 30개 사업이며, 한 해 동안 4,681억 원이 지급되었다.

2014년부터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을 최소비용보전방식(MCC; Minimum Cost Compensation)으로 전환하였다. 최소비용보전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사업운영비를 설정하고, 실제 운영수익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 사업을 추진되던 사업들을 최소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한 예로는 인천공항철도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역-인천국제공항역을 운행하는 인천공항철도 사업에 대해 2015년부터 최소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국토교통부(2015)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40년까지 약 7조 원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추계하였다. 2017년 최소비용보전 대상 사업은 12개이며, 한 해 동안 5,183억 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기존 BTO, BTL 중심에서 위험분담형(BTO-rs)³, 손익공유형(BTO-a)⁴ 투자방식을 추가하여 정부와 민간사업자 손실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04

●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전환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유발효과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전략 중 하나로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 방식을 현행 열거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3월 11일 발의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⁵

² 류시균 외(2011), 황택진·강정규·이재오(2015)를 참고하였다.

³ 위험분담형은 손실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50:50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⁴ 손익공유형은 손실 발생시 30% 손실까지는 민간이 먼저 부담하고, 손실이 30%를 넘는 경우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익 발생 시에는 정보와 민간이 약 7:3의 비율로 이익을 공유한다. 대표적으로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이 있다.

⁵ 2019년 3월 11일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19120) 하였다.

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을 포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범위를 기존 53개 법률에 따른 시설에서 ①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과 ②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로 포괄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현행 민간투자의 대상사업은 「민간투자법」에서 53개 법률에서 지정한 시설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법」에 열거 되어 있는 사업 이외에 새로운 SOC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 개정 없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며, 오롯이 재정부담으로 추진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포괄주의 방식에서의 전환은 민간투자가 추가적인 관련 법 개정 없이도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05

●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신속 집행관리 및 조기착공 지원

기획재정부(2019)는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에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지자체와의 이견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조정함으로써 신속 집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 12.0조 원에 달하는 5개 대형 교통사업(평택-익산 고속도로 3.7조 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1.8조 원 등)이 환경영향평가·주민민원 등으로 지연되고 있어, 연내 신속하게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환경시설, 대학기숙사, 어린이집 등 0.6조 원 규모의 국민 생활 밀착형 SOC 민자사업은 4월까지 착공할 계획이다. 직접 재정집행을 통한 신속추진 방안 이외에도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추진 상황 모니터링을 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표 3. 주요 대형 민자사업 모니터링 관리 대상

사업명	총투자비 (조 원)	현 황	'19년 추진 계획
합계(13개)	12.6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2개)	0.1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4월)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병영시설 등(6개)	0.5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4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1.8	실시 설계완료 주민·지자체 협의 중	지자체협의 → 착공(3/4분기)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0.8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7월)
평택-익산 고속도로	3.7	실시 설계완료,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중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인허가 협의 → 착공(9월)
신안산선 복선전철	4.1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하반기)
동북선 경전철	1.6	실시설계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10월)

자료: 기획재정부(2019)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제도 범위내에서 사업 지연을 축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목표달성을 꾀하고 있다.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⁶로 최대 허용 기한을 제한하여, 예측하지 못한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대 1년 이내에 완료하고, 실시협약 기간도 최대 18개월(기존 도로사업 평균 22개월, 철도사업 26개월 소요)로 단축하도록 하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 문제와 불확실성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보인다.

06

시사점

최근 예산의 SOC 분야 재원배분 추이를 보면, SOC 예산 규모는 2010년 25.1조 원이었으나, 2019년 19.8조 원으로 축소하였다. 더군다나 총지출 대비 SOC 지출의 비중은 2010년 8.6%에서 2019년 4.2%로 9년 만에 절반 이하로 더욱 빠르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한 건설사업비 증가를 고려하면, 전액 정부예산만으로 추진하는 재정사업으로는 SOC 수요 부족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자본이 재정을 보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규모 민자사업의 조기 착공 및 추진은 민간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시켜 총수요를 진작시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거시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부문의 사업기획 창의성과 X-효율성⁷을 활용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민 효용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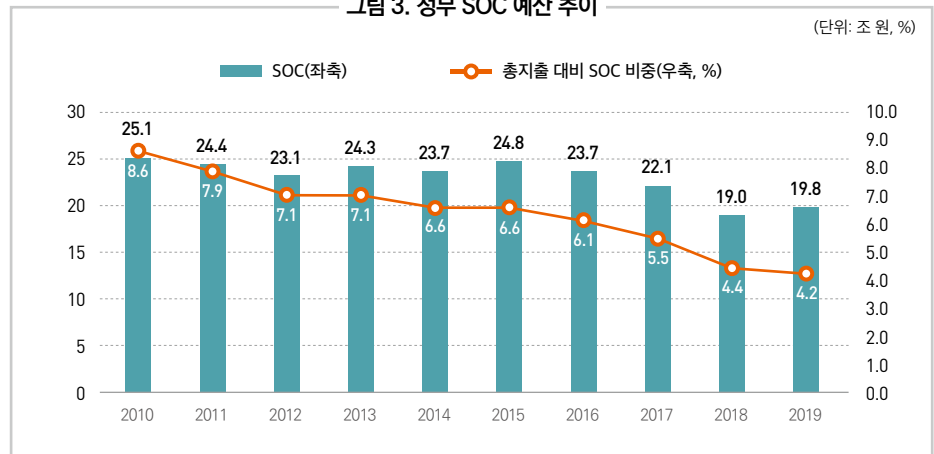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체의 사업제안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의 위험부담을 경감하는 방향과 함께 투자대상의 다양화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확대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동시에 정부의 사업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공공성 강화 방향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⁶ 민간투자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 사업지정 및 사업계획 고시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실시협약 체결 →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단계로 추진된다.

⁷ X-효율성은 시장경쟁에 노출된 기업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효율성을 의미한다.

그림 3. 정부 SOC 예산 추이



주: 본예산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대표적인 것이 민간투자시설 이용료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국민 기대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가격은 자칫 시설이용에 따른 국민 편익보다 재정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공급가격 산정을 통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미 확정된 협약이더라도 필요한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 개정⁸⁾을 통해 국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 법에서는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협약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운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추진 단계와 사후관리 단계에서 민간투자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⁸⁾ 2018년 1월 16일 일부개정된 「유료도로법」(법률 제15357호)은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문헌

- 국토교통부.(2015).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 국가재정부담 덜어」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KDI. (2015). 「2013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
- 기획재정부. (2018). “2017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 기획재정부. (2019).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 발표」. 보도자료.
- 류시균 외. (2011). “민간투자 개선방안”. 이슈&진단, 제27호. 경기개발연구원.
- 박지형·장한별·이혜진. (2018).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 로드맵 수립 사전 연구”. 이슈페이퍼, 18-02.
- 황택진·강정규·이재오. (2015). “민간투자법상의 최소수입보장방식과 최소비용 지원방식의 비교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60집, pp.47-58.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1). “임대형 민자사업(BTL)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세부요령”. 2010년도 민간투자 정책연구 보고서.

부 록

「민간투자법」의 시설유형

연번	대상시설 유형
1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7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8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9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10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1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12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13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1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9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20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2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7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연번	대상시설 유형
2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29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3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32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3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3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3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3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7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39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4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41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4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4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44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4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4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48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4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5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02

KPFIS-인사이드

재정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정주호 정보보호본부 과장(juhoojj@kpfis.kr)



01

● 배경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로 한 IT 기술이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은 경제, 사회, 정치, 금융 등 국가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상호 연결이 중요시되는 초연결 사회로의 지향성이 매우 강조됨에 따라 정보시스템 또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다양한 요인의 결합이 소프트웨어로 유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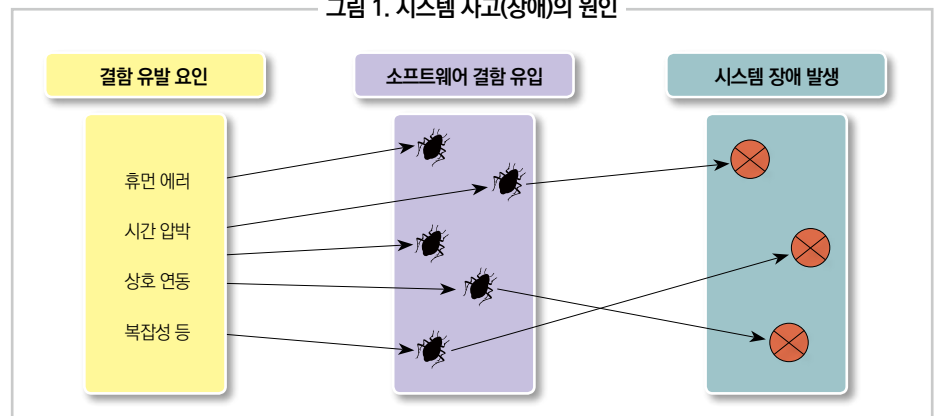
소프트웨어에 결합이 생기는 경우 장애가 발생되는데,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합의 조기 발견과 제거, 결합 유입 방지 등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02

● 정보시스템 사고(장애)의 원인 및 과정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유발하는 과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드웨어 장애는 장애 유형이 잘 목록화되어 있고 감시나 통제, 장애 대책 등이 대체로 잘 작동하는 편이지만, 소프트웨어는 특화된 전문가의 개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전에 절차적으로 확인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정보시스템 사고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자의 실수, 개발이나 구축 기간의 제한, 정보시스템 간 상호 연동성 및 복잡성 등의 결합요인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결합요인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구성하는 동안에 결합으로 유입되어 직접적 또는 잠재적 장애요소를 내포하게 된다.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결합은 시스템 장애로 이어지고 서비스 중단과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기도 한다.

그림 1. 시스템 사고(장애)의 원인



03

●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의 중요성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별로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아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각 단계별 역할을 간략히 정의한 것이다.

그림 2. 소프트웨어의 개발 주기



2014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결함의 약 83%가 요구사항 및 설계 단계에서 발견되고 17%가 코딩과 테스트 단계에서 발견됨에 따라 요구사항 분석과 설계 단계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결함 발견 단계

단계(Phase)	결함(% of defects)	개선 필요(% effort to fix)
요구사항(Requirements)	56	82
설계(Design)	27	13
코딩(Code)	7	1
그 외(Other)	10	4

따라서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 원칙을 중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개발 전(全) 단계에서의 품질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된 모든 멤버가 품질관리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초기 품질 활동으로 결함 제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초기 품질 계획 및 활동을 통해 재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

04

● 보안과 품질의 차이점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데 있어 보안과 품질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정보시스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보안과 품질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가. 정보시스템의 관리적 관점

정보시스템관리의 정책적·전략적 개념에서 바라보면 소프트웨어 품질과 보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림 4>와 같이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측면에서 서로 공유되거나 겹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표준(ISO)에서 정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품질은 소프트웨어 및 그 하위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와 결함을 포함하여 개발 단계의 잠재적 오류 등 매우 넓은 커버리지(coverage)를 갖는 반면, 보안은 외부 또는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악용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실수 또는 구성의 문제로 제한하여 정의하고 있다. 아래 표는 보안과 품질을 정의한 것을 나타낸다.

그림 4. 정보관리 프레임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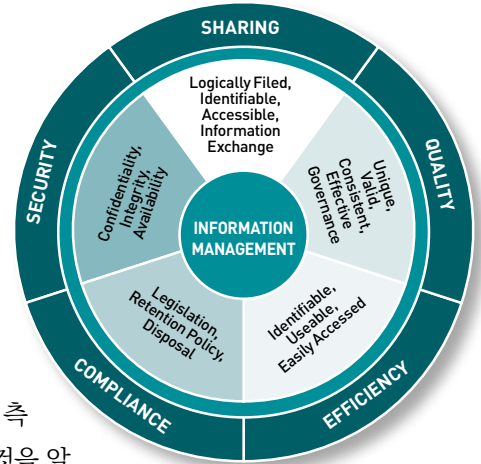


표 1. 품질(quality)과 보안(security) 비교

	종류	내용	비고
품질 (quality)	버그(bug)	실행되거나 활성화 된 경우 잠재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시스템의 결함	ISO/IEC 15026-1
	소프트웨어 결함(defect)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또는 최종 사용자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조건 (프로그램이 오작동하거나 잘못되거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코딩 또는 논리오류)	
	소프트웨어 오류(fault)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성 요소, 장비 또는 하위 시스템 수준의 비정상적인 상태 또는 결함	ISO/IEC 10303-226
보안 (security)	소프트웨어 취약점(vulnerability)	해커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액세스하기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실수	CVE
	소프트웨어 약점(weakness)	알려지지 않은 시스템 및 네트워크가 존재하여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구현, 코드, 디자인 또는 아키텍처의 결함	CWE

품질과 보안을 완전히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품질과 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전사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 경우 개발조직 입장에서는 품질관리와 보안관리에 대한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갖는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의 테스트 단계에서 결함을 조치하였으나 이후 보안관리 절차에 따라 또다시 보안결함을 조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품질관리 이전 단계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거나, 보안결함이 조치되지 않고 무시될 수 있다.

나. 보안은 품질관리의 일부로 보는 시각(devO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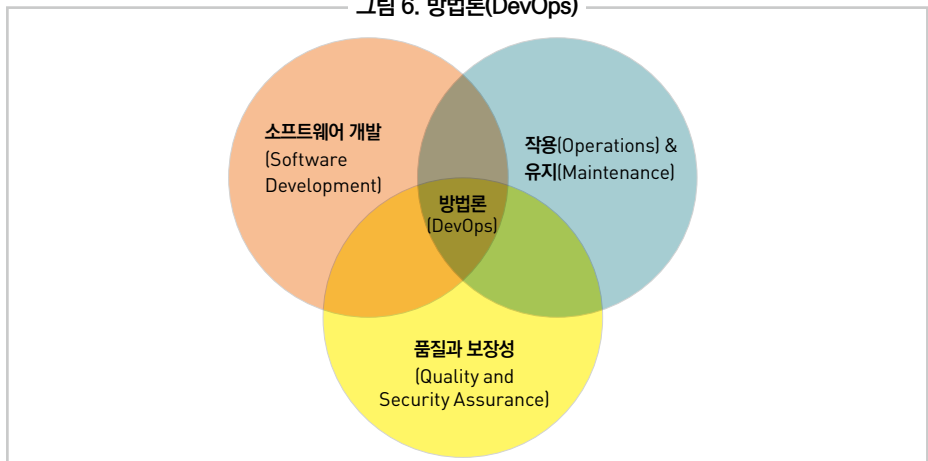
품질관리에 있어서 일부 보안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7가지 품질관리 지표 중 1개 지표만이 보안영역으로 관리되며 개발 전(全) 단계와 매핑시켜보면 보안은 테스트 단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단계에서 품질과 보안조직과의 협의를 통해 보안영역과 공통된 부분을 미리 정의함으로써 품질 보증을 관리할 수 있다.

그림 5. 소프트웨어 품질 지표(Software Quality Indicators) & 테스트 지표(Test Metr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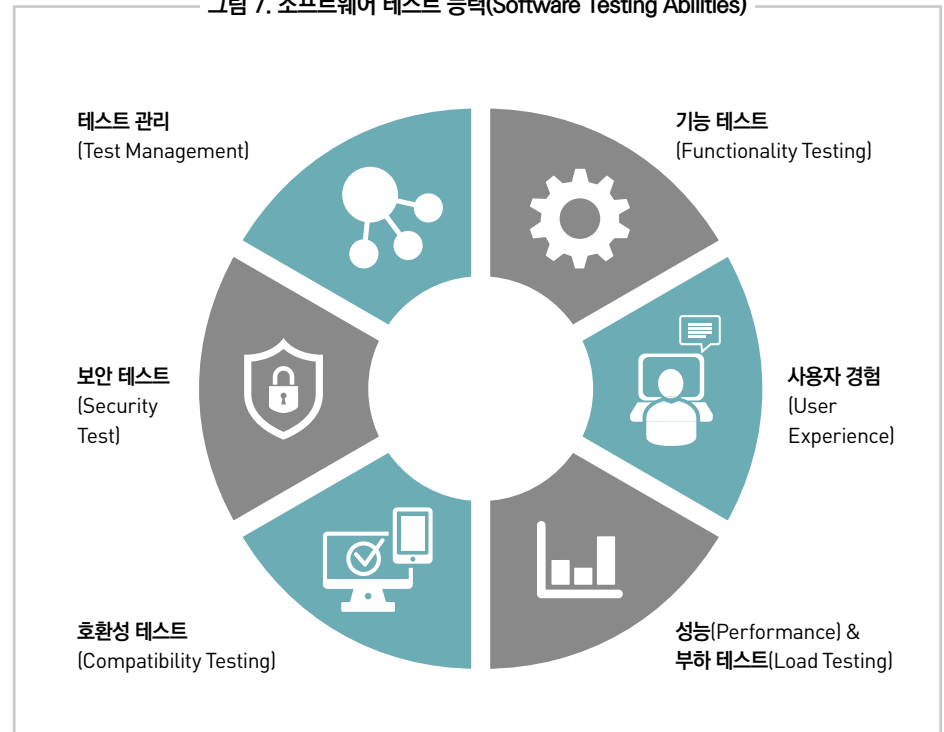
신뢰성(Reliability)	Number of failures, calender time
수행효율성(Performance efficiency)	Load testing, stress testing, response time
보안성(Security)	Time to fix failures, number of error messages
유지보수성(Maintainability)	Lines of code
전달율(Rate of Delivery)	Number of "stories"
시험가능성(Testability)	Number of technologies needed to test, quality of documentation
유용성(Usability)	Completion rate, satisfaction level

그림 6. 방법론(DevOps)



이 경우 보안은 소프트웨어 테스트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취약점 진단(시큐어코딩 보안)을 주로 수행하고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전체적인 보안관리에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그림 7. 소프트웨어 테스트 능력(Software Testing Abilities)



다. 쉐 소프트웨어 품질단계에 보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시각(DevSecOps)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 모든 사람이 보안에 책임을 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개발(development), 운용(operation), 보안(security)의 직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2012년 가트너에서 모델을 발표).

DevSecOps 방법론과 매우 유사한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한 Secure-SDLC(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로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OS)인 Window Vista부터 적용되어 매우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을 적용하려면 보안전문인력, 방법론 및 절차가 전 개발주기에 투입되어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품질관리 조직과 함께 개발/운영조직에도 전담 보안인력이 존재하여야 하는 이슈가 발생한다.

그림 8. DevSecOps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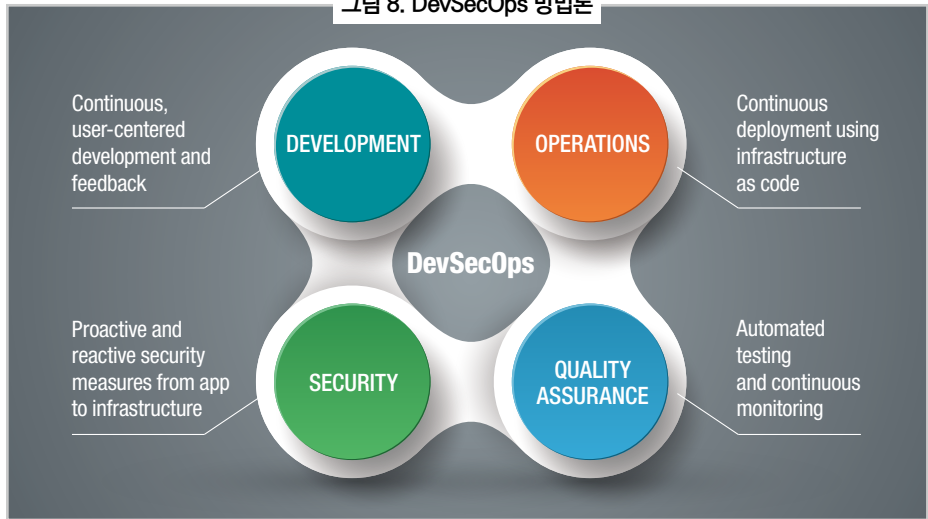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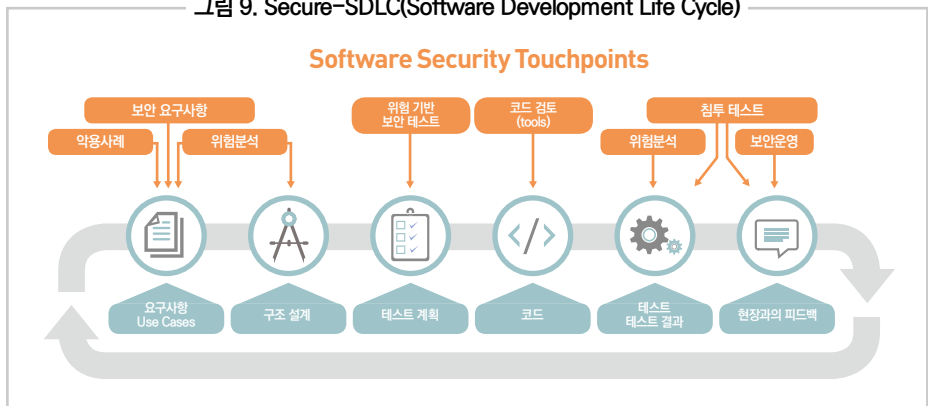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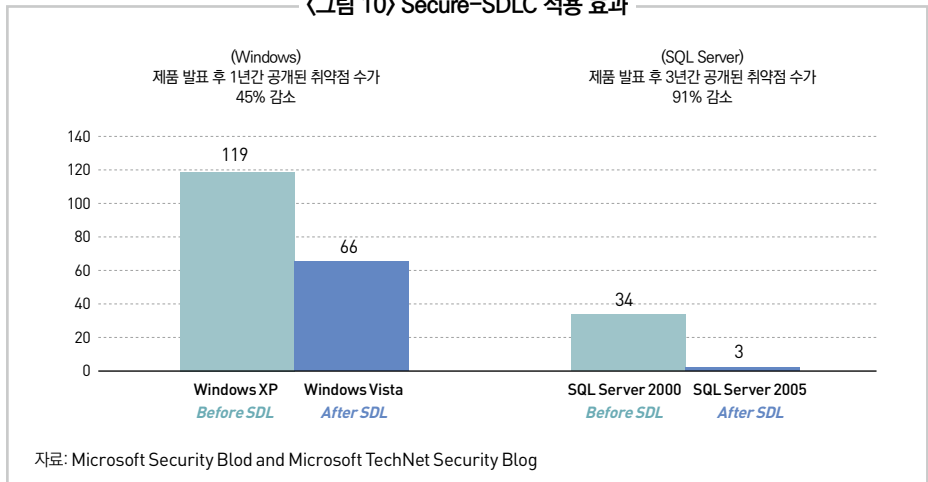


그림 9. Secure-SDLC(Software Development Life Cycle)



〈그림 10〉 Secure-SDLC 적용 효과





05

● 재정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품질관리를 위한 방향성

현재는 대형 IT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전담조직과 예산,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품질관리를 수행하지 않고 있거나 개발 부서 자체적인 절차에 의해 수행, 테스트되고 있어 전사 관점에서의 검증 프로세스가 없다.

보안관리의 기술적 측면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할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안취약점 진단툴에 의존하여 점검하고 조치하는 등 전체적인 품질관리 차원보다는 지엽적 보안 관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뿐만 아니라 개발까지 직접 수행하고 관리하는 조직으로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가 어느 기관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 전 과정에 보안이 적용되는 DevSecOps 기반의 방법론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SecureSDLC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발과정별로 통일된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담조직의 신설과 각 운용/개발조직에 품질관리 직무가 부여된 전담인력이 필요하며 개발주기(lifecycle)에 따라 적절히 감소·보고되어야 한다.

재정분권시대 지방교부세제도의 효과적인 운용 방안

곽채기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kg1000@chol.com)



01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역할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서는 지방교부세의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며,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교부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 따라 현재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재원보장기능(수직적 재정불균형 조정기능)과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fiscal imbalance)을 시정하는 수평적 재정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재원의 용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사용에 아무런 조건이 첨부되지 않는 일반적인 재정지원금, 즉 일반재원으로 정의하고 있다.¹

「지방교부세법」의 이런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national minimum)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래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어야 할 지방세 몫을 일정 수준 할애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공유하는 자치단체의 고유한 독립공유세원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전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단체별 재원 배분 규모를 산정하여 직접 배분하는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혁 필요성과 방향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 있는 재원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세입 분권화보다는 세출 분권화를 중심으로 분권화 노력을 전개하여 왔다. 그 결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재정형평화 기능보다는 자치단체의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로 활용됨에 따라 지방세 수입에 비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팽창하여 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세출 분권화(0.429)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입 분권화(0.170)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어 왔고,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제약의 연성화가 초래되어 재정분권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효율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분권 과제의 핵심적 내용은 국세-지방세 비율을 7 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 대 4 수준까지 개선하고, 이와 연계하여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 10월 30일 관세 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1단계(2021년~2022년)와 2단계(2019년~2020년)로 구분하여 발표했다. 1단계에서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0%p 인상하고, 담배분 개별소비세에서 교부되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율을 25%p 인상하는 대신에 3.5조 원 상당의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의 19.24%를 법정율로 배분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재원이 2019년에 0.7조 원, 2020년에는 1.7조 원 감소하게 된다. 아직 구체적인 재정분권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2단계에서는 지방소득세율 인상 등 지방세 추가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본적 개편 등을 모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방세 비중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원공동이용방식을 활용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세수의 지역 간 분포가 불균형하여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재정력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세원공동이용방식을 활용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충 과정에서 불가

1.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제도는 광의적으로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이중 전통적으로 지방교부세제도의 근간을 점하고 있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성된 지방교부세만을 다루고 있다.

피하게 초래되는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 감소를 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이 개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경우 자치단체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 자치단체 계층 간 재정불균형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자주재원주의원칙에 따른 지방세 비율 제고를 목표로 한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서 초래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배분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세 확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제고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유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배급제 방식'의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재정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교부세 유인 기능 강화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지방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안

재정분권화가 확대되면 자치단체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방공공서비스 공급 수준과 경비 부담 수준에 관한 자치단체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 이는 재정형평성의 요구와 갈등을 빚게 될 소지가 많다. 특히,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하여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과 보조금 규모가 축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행정서비스의 외부 유출효과(spill-over effect)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지원 활동이 위축될 여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재정분권화 확대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의 기능과 재원배분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지방재정력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의 조정을 통해 지방세 비중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지방세 수입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 지방교부세를 통해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의 조정과 자치단체 상호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지방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 규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후자는 주어진 지방교부세 규모 하에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완화 또는 해소하는 과제이다. 그런데 현재 문제인 정부의 재정분권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지방세 확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되는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의 감소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정분권 시대에 요구되는 지방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는 후자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다.

지방교부세 규모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을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방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방식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과정에서 다양한 산정단위와 단위비용, 보정계수 등 외형적으로 표준화된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이 지방교부세 산정 및 배분의 객관성과 재정형평화 기능을 원활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이 사실상 기존의 행정수요를 기초로 하고 있어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의 추가적 행정서비스가 창출하는 높은 한계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기준재정수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자치단체 간 배분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객관성과 정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수요의 대다수 항목이 인구 및 면적과 관련된 항목이며, 보정계수의 많은 항목이 사회간접자본의 보급률과 관련 있는 항목임을 고려할 때, 인구, 면적 및 사회간접자본의 보급률 등을 중심으로 한 단순화 방안을 고려가 필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 규모의 예측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식의 단순화에는 trade-off가 존재한다. 산정방식을 단순화하면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를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국가최소한의 서비스 보장을 위한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를 산정·배분함에 있어서는 산정방식의 단순화를 통한 개선 효과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확한 재정수요를 포착하여 비례적 형평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경험적 연구 등에 의거하여 인구와 면적 등을 배분기준으로 활용하는 ‘신형교부세’를 도입하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들이 준용되고 있는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준재정수입 산정 과정에서 자치단체 자체수입의 기준재정수입 산입률을 모든 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80%로 적용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크게 광역시, 일반시, 군 등으로 구분하여 기준재정수입 산입률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나머지 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 산입률은 현행 80%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군자치단체의 산입



률은 60~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산입률을 차등 적용하는 공식을 개발하여 모든 자치단체에 차등적인 산입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되는 모든 자치단체에 동일한 비율의 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간 재정력의 격차 완화와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조정률이 100% 미만인 경우,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는 높은 조정률을 적용하고,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조정률을 적용하는 차등조정률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안

재정분권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를 전제로 세입 자치를 통해 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응익원칙에 입각한 재정책임성 확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 이후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정분권의 확대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재정책임성 확보 측면에서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역기능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정부족액 보전 형태의 지방교부세 배분 방식 하에서는 자치단체가 자체세입 확충 노력을 게을리하고 공공서비스를 과잉 공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자체노력 산정방식과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확대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세입 확충 노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센티브 재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가칭 '성과교부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하는 수요자체노력(가감)과 수입자체노력(가감)을 분리하여 이를 별도의 재정수요 한 유형으로 신설(예: 특별교부세에 성과수요 항목)하거나 별도의 교부세 유형(예: 성과교부세)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단순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배분 과정에서 재정인센티브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재정책임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의의 및 현황과 개선과제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yrkim0425@kangwon.ac.kr)

02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집행되고 있는 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의의와 효과와 정책 제언을 하기 위함이다.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하에서 언급된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의미함)은 보통교부금의 획일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한 대응자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부를 받는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특별교부금의 축소 또는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다. 포물리(formula)로 배분되는 보통교부금과 달리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이 교육재정 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양하지만, 특별교부금의 정책 효과와 성과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증거 제시 노력이 부족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국가시책 사업 수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교부금의 의의는 적지 않다. 교육자치가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교육의 형평

성,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앙정부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유효한 정책수단(policy tool)이 특별교부금인 것이다. 특히 본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지역 간 교육인프라 격차 개선을 위한 특별교부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방교육특별교부금의 주요 현황과 효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이의 운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의의와 목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7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면서 법으로 규정되었다. 동법 제1조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이다. 즉, 교육의 균등화를 위한 형평화 재원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를 도모한다(정현주·한유경, 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된다. 보통교부금은 지방의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으로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미달액을 교부한다(윤홍주, 2012). 보통교부금은 학생 수, 학교 수, 교원 수 등 양적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의 특별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재원으로 교육부에 일정한 재량권이 부여된다(김민희·김지하, 2012). 특별교부금은 지역의 특별한 수요에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교부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된다(김민희, 2014).

특별교부금의 특성은 예비비,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과 비교해볼 때 명확히 알 수 있다. 먼저, 특별교부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지방교육수요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사용 목적을 미리 정해놓지 않는 예비비와 유사하며 시급한 지역의 교육 수요에 대처한다(김민희·김지하, 2012; 정현주·한유경, 2017).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예산의 용처에 제한이 없는 예비비와는 달리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사업에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최준렬, 2009).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의 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과 유사하다(최연태·이재완, 2011).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수요사업과 재해대책수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별교부금에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교육관련 사업인 ‘국가시책사업’이 추가된다(오세희, 2016).



대신 중앙정부는 국가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국고보조금에 비해 사업대상의 선정, 예산의 계상 등에 있어 교육부의 자율성이 높다(김민희·김지하, 2012). 또한 국고보조금은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하는데 반해 특별교부금은 이와 같은 감독과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정현주·한유경, 2017).

결국 특별교부금은 예비비,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고 교육부의 자율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특별교부금의 성과 분석에 대한 필요성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최준렬, 2009).

3.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기능

특별교부금은 2010년 내국세 대비 교부금 비율이 20.27%로 조정되면서 현재 그 규모가 내국세 대비 0.81%로 확보되었다(김민희·김지하, 2012). 특별교부금의 기능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수요(60%), 지역교육현안수요(30%), 재해대책수요(10%)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가시책사업수요는 국가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할 교육관련 국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오세희, 2016) 교육부에서 직접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교부한다. 교육부 내 특별교부금 담당부서에서는 각 사업부서로부터 사업요구서를 제출받아 특별교부금 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와 장관 결재를 받아 매년 1월 31일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김민희·김지하, 2012).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2017년 기준)」에 따르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의 교육현안수요가 있을 때 지원한다.” 교부대상은 강당, 체육관, 도서관, 특별교실, 급식실 및 기숙사 등의 학교 교육시설 신·증축 사업, 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지원기관 시설 관련 사업, 지역별·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교육 사업,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현안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교육현안수요 사업은 연 1-2회 시·도 교육청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 교육부에서 심사를 한 후 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김민희·김지하, 2012).

셋째,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와 재정수입 감소에 소요되는 재원이다(최준렬, 2009). 그러나 해당 연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금액이 남을 경우에는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으로 지원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 2, 20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혹은 재정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재해대책 수요가 발생한 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연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되고 있다(오세희, 2016).

4.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운영 현황

2010년부터 내국세 대비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20.27%의 4/100으로 조정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20.46%로 증가하였다.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연도별 특별교부금 규모는 <표 1>과 같다. 구체적으로 특별교부금은 '11년 12,572억 원에서 '14년 14,564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15년 13,870억 원으로 약간 감소하였지만, 17년에 다시 17,827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표 1. 연도별 특별교부금 규모

(단위: 억 원)

연도	특별교부금			
	계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원안수요	재해대책수요
2011	12,572	7,543	3,772	1,257
2012	13,934	8,360	4,180	1,394
2013	14,514	8,708	4,354	1,452
2014	14,564	8,738	4,370	1,456
2015	13,870	8,322	4,161	1,387
2016	15,216	9,129	4,565	1,522
2017	17,827	10,696	5,349	1,783

자료: 지방교육재정알리미(2019년 4월 기준)

5.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개선과제

첫째,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교육 시설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의 교부액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교육인프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특별교부금의 증가가 교육인프라 수준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교육재정 배분, 특히 특별교부금의 배분에 있어 분명한 정책적 증거에 기반할 때 특별교부금의 본래 취지를 충족하고, 제도에 대한 지지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부연하면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지 못한 기초자치단체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 교육청 중 교육인프라의 수준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대한 우선적 배정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40~60개의 지자체가 관련 특별



교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는데, 이들 지역에 대한 교육인프라 수준을 교차 분석하여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신가희·김영록, 2018).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인프라에 대한 노후 정도에 대한 통계를 연중 관리하고, 이를 특별교부금 배분에 연계한다면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통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교육인프라 개선 효과는 증명되었으나, 여전히 예산 배분의 자의성, 합리성의 부족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은 예산배분의 자의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향후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교육의 질, 교육의 내용 등 보다 광의의 의미에서 교육인프라를 측정하고 특별교부금이 교육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특별교부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인프라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원인 보통교부금 교부액,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재원 중 학교시설사업경비에 대한 정보는 광역자치단체 수준까지만 공개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며, 이를 연구자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특별교부금의 성과를 논하기 위한 향후 과제는 특별교부금이 교육인프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적재적소로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일 것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정보 공개의 확대와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노력이 축적될 때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참고 문헌

- 김민희·김지하. (2012).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pp. 1-34.
- (2014). “특별교부금제도 관리운영과정 개선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23(2). pp. 59-91.
- 오세희. (20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정치성과 합리성에 관한 소고”. 『비교민주주의연구』, 12(1). pp.101-129.
- 윤홍주. (2012).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1(3). pp.45-171.
- 신가희·김영록. (20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인프라 개선효과 분석 :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1(4). pp. 103-122.
- 정현주·한유경. (2017). “학교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공평성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6(1). pp.93-117.
- 최준열. (2009).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8(2). pp.137-165.

참고사이트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http://www.eduinfo.go.kr>



※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 지방교부세 현황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자원 중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나 지원받는 이전재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19.24%(법정률)*

* 내국세에는 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와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금액은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일부도 재원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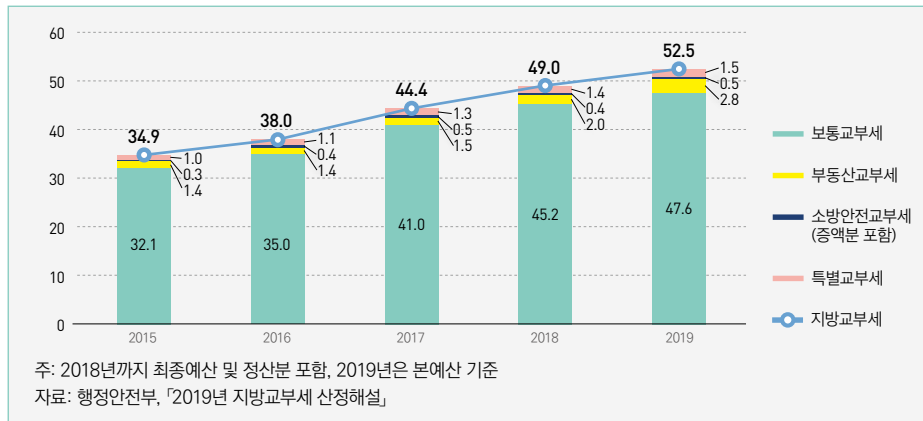
□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의 교부세 규모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년 기준 52.5조 원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특별교부세로 구성되며, 이 중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 목적에 사용

-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7%를 차지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등 일반재원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족분을 보전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활용
- 특별교부세는 전체 지방교부세의 3%(19년 기준 1.5조 원)로 특별한 지역현안 대응,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사용

표 1. 지방교부세 규모 변화

(단위: 조 원)



○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하며 '19년 기준 0.5조 원이 교부되었으며 이는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에 활용

* 소방직 국가직화 추진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율 35%로 늘릴 예정이며 올해는 27.5%로 증가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이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등) 및 교육행정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내국세의 20.46% 및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9년부터 내국세 교부율이 기존 20.27%에서 20.46%로 0.19%p 증가하였으며 '19년 기준 55.2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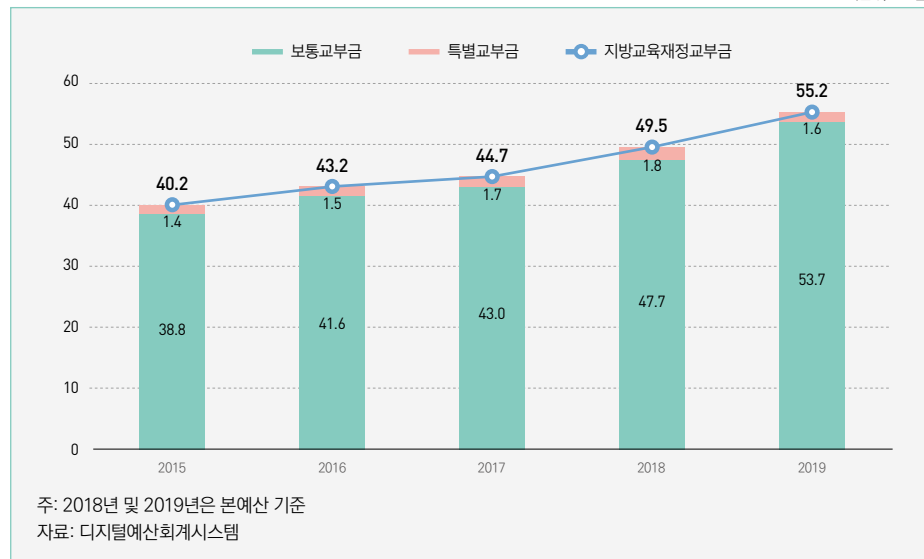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부금의 97%에 해당하는 보통교부금과 전체 교부금의 3%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교부금으로 구성

○ 보통교부금은 '19년 기준 53.7조 원이며, 교사 및 교육공무원 인건비, 시설비,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

○ 특별교부금은 '19년 기준 1.6조 원으로 유·초·중등 분야의 국가 시책사업, 특별한 지역현안수요 및 예측하지 못한 재해발생과 같이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응

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 변화

(단위: 조 원)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1. 최근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2019년 2월 중 총수입은 26.1조 원, 총지출은 44.8조 원이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누계 총수입은 77.5조 원으로 진도율¹은 16.3%이고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증가(진도율 1.0%p 하락)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누계 총지출은 89.3조 원으로 진도율²은 19.0%이고 전년 동기 대비 12.8조 원 증가(진도율 1.3%p 상승)하였다.

2019년 2월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단위: 조 원, %)

	2018년											2019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총수입 (진도율)	77.4 (17.3)	121.2	169.9	214.0	243.8	291.9	327.1	359.2	403.3	432.7	465.3	51.4	77.5 (16.3)
총지출 (진도율)	76.5 (17.7)	122.9	169.6	205.3	247.3	282.7	311.1	345.2	374.6	395.3	434.1	44.5	89.3 (19.0)
통합재정수지	0.9	-1.8	0.2	8.7	-3.5	9.8	16.0	14.0	28.7	37.4	31.2	6.9	-11.8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8	8.8	13.8	17.9	22.0	24.7	28.0	31.3	34.3	37.6	41.7	2.0	4.4
관리재정수지	-3.9	-10.5	-13.6	-9.2	-25.5	-15.5	-12.0	-17.3	-5.7	-0.2	-0.6	4.9	-16.2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2019년 2월 중 국세수입은 12.1조 원(소득세 8.4조 원, 법인세 1.0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 원 감소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49.2조 원으로 일반회계 47.7조 원, 특별회계 1.4조 원으로 구성된다.

¹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47.7조 원이며 2019년 총수입 예산은 476.1조 원이다.

²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지출 예산은 432.7조 원이며 2019년 총지출 예산은 469.6조 원이다.

총수입
77.5조 원

총지출
89.3조 원



국세수입(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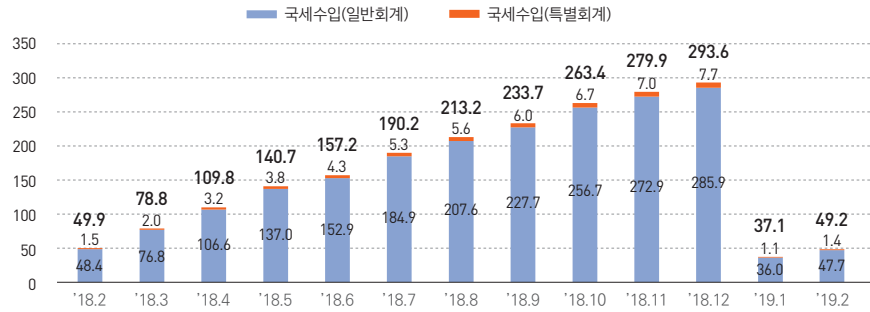
47.7조 원

국세수입(특별회계)

1.4조 원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주: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소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의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8조 원 적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4.4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6.2조 원 적자이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12.7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12.4조 원 악화되었다.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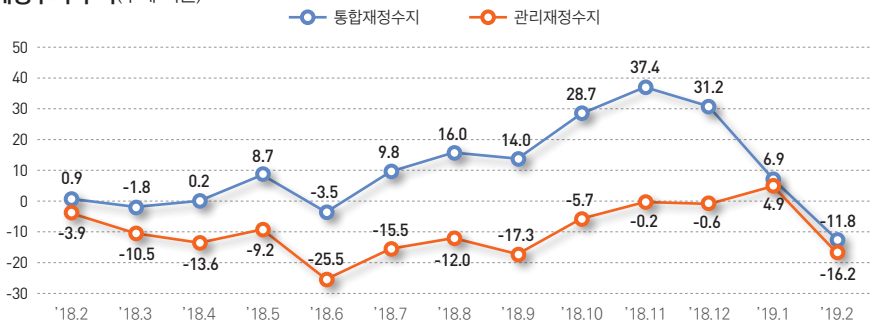
-11.8조 원

관리재정수지

-16.2조 원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중앙정부 채무

2019년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7조 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증가(9.1조 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0.2조 원) 등에 따라 전월 대비 9.1조 원 증가하였다.

3.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되며, 현재 지방정부 채무 통계는 결산 기준으로 연 1회 산출되므로 월별 추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한다(2018년 기준 국가채무(잠정치)는 680.7조 원으로 지방정부 채무(잠정치) 28.9조 원이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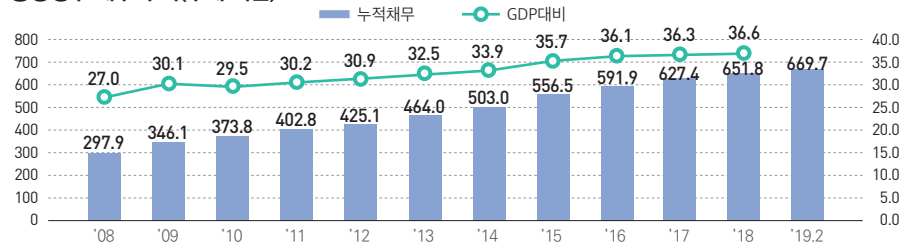


중앙정부 누적채무

669.7조

중앙정부 채무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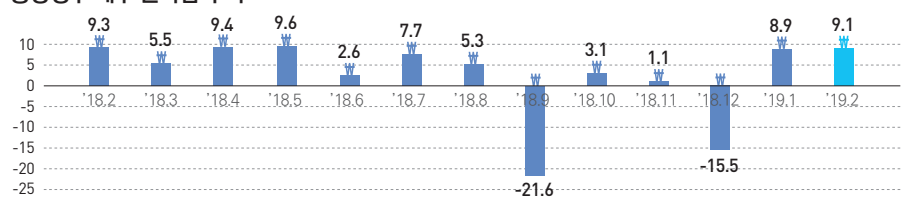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순차입 전월 대비

9.1조 원

중앙정부 채무 순차입 추이

(단위: 조 원)



	2018년												2019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순차입	9.3	5.5	9.4	9.6	2.6	7.7	5.3	-21.6	3.1	1.1	-15.5	8.9	9.1	
연간 누계	17.2	22.7	32.1	41.7	44.3	52.1	57.3	35.8	38.9	39.9	24.4	8.9	18.0	

주: 순차입이란 특정 기간 내에 국고채 발행 또는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증가 규모에서 상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감소 규모를 제외한 잔액을 나타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2019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⁴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2월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은 55.6조 원으로, 연간 계획(252.6조 원) 대비 22.0%를 집행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는 48.2조 원(연간 계획 대비 23.1%), 40개 기금에서는 7.4조 원(연간 계획 대비 16.9%)을 집행하였다.

2월 말까지의 주요 분야별 집행률은 과학기술(54.0%), 보건(37.2%), 통신(27.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7.2%) 분야 순으로 높으며, 국방(10.0%), 국토 및 지역개발(14.0%), 교통 및 물류(17.0%)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월 월간 집행률은 11.8%이며, 분야별로는 과학기술(29.2%), 보건(18.6%), 문화 및 관광(16.3%),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14.9%) 분야의 월간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⁴ 재정집행관리 점검 대상인 45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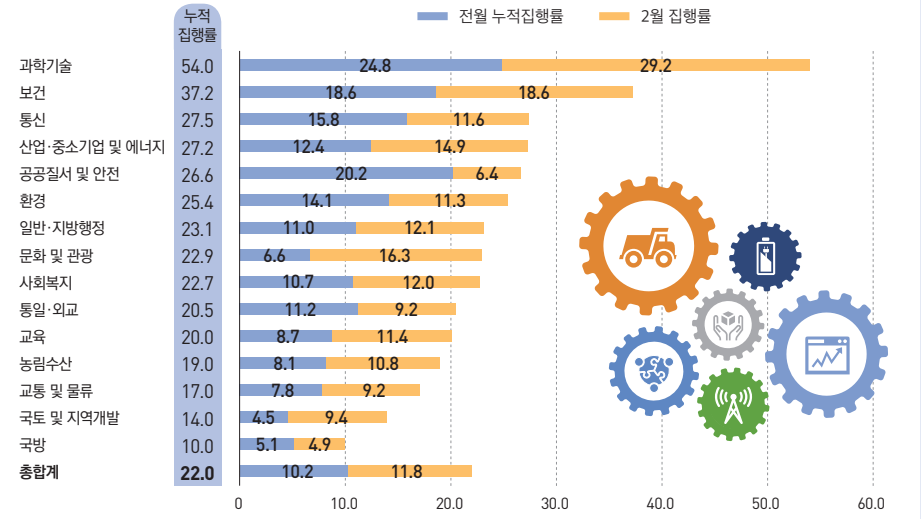


누적 집행률
22.0%

월간 집행률
11.8%

주요 관리대상사업 분야별 집행률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유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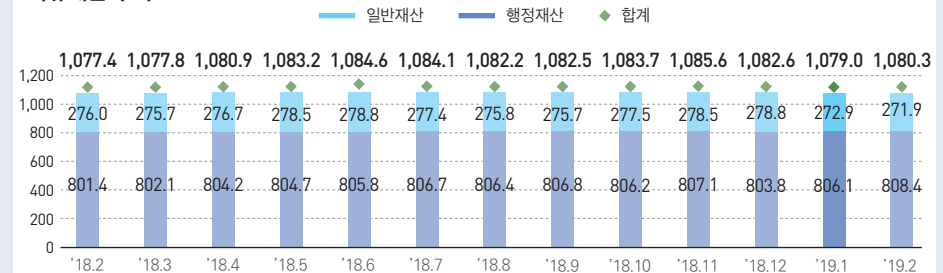
2019년 2월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1,080.3조 원으로 전월 대비 1.3조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⁵ 808.4조 원(전월 대비 2.3조 원 증가), 일반재산⁶ 271.9조 원(전월 대비 1.0조 원 감소)으로 구성된다.

행정재산
808.4조 원

일반재산
271.9조 원

국유재산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년,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⁵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청·관사, 도로, 하천 등이 이에 해당된다.

⁶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2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 5,141억 원이며 전월 대비 2,248억 원 증가했다. 처분 총액은 1,924억 원이고 전월 대비 938억 원 감소하여, 2월 중 취득 총액이 처분 총액을 2조 3,217억 원 초과한다.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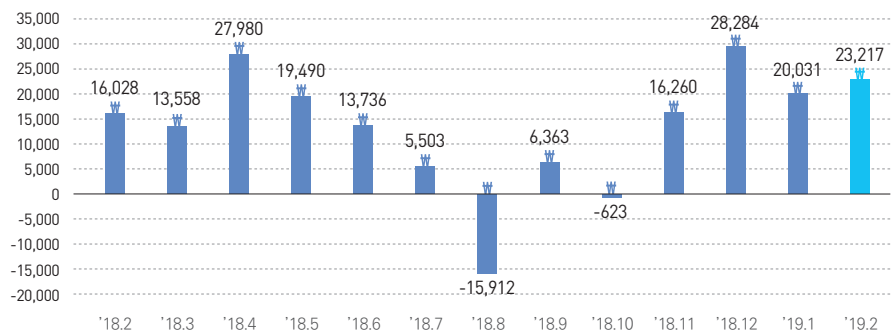
2조 5,141억 원

처분

1,924억 원

국유재산 취득·처분 추이

(단위: 억 원)



	2018년												2019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순취득	16,028	13,558	27,980	19,490	13,736	5,503	-15,912	6,363	-623	16,260	28,284	20,031	23,217	
취득 ³⁾	22,818	14,441	29,944	22,848	16,276	11,776	21,844	11,385	7,972	18,173	35,328	22,893	25,141	
처분 ⁴⁾	6,790	883	1,964	3,358	2,540	6,273	37,756	5,022	8,595	1,913	7,044	2,862	1,924	

주 1) 2018년,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3) 매입, 교환 및 환지, 신규등록 및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

4) 매각, 교환 및 환지, 멸실 및 양여로 인한 처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국고보조금

2019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77.8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66.9조 원에 비해 약 10.9조 원 증가하였다. 2019년 2월 기준으로 예산현액⁷⁾은 78.4조 원이며, 2월 누적 실적 행 실적은 9.0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 실적행되었다(2월 누적 교부집행액⁸⁾은 예산 현액 대비 22.3%)

⁷⁾ 전년도 이월액 등이 반영된 예산정보로서 당해연도 국회 확정 예산액과는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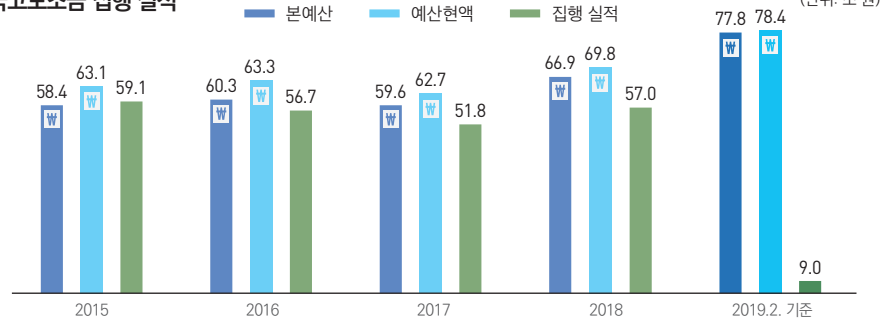
⁸⁾ 교부집행액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지급한 보조금 규모이며, 실적행액이란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전달(이체)된 보조금 규모를 의미한다.



2월 누적실집행률

11.5%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분야별로 사회복지 8조 267억 원, 농림수산 1,875억 원, 환경 1,528억 원, 보건 1,400억 원, 문화 및 관광 1,05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35억 원으로 실집행되었다. 예산현액 대비 교부액을 나타내는 교부집행률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8.9%로 가장 높지만,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액을 나타내는 실집행률은 사회복지 분야가 17.4%로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교부집행률

48.9%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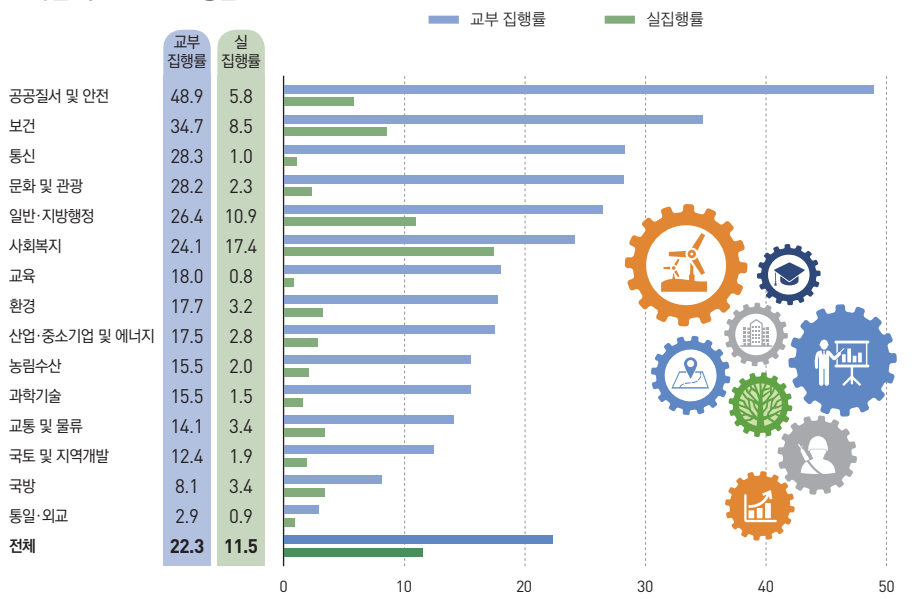
가장 높은 실집행률

17.4%

(사회복지 분야)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

(단위: %)



주: 2019년 2월 누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이달의 주요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e나라도움)에서 **안전 보장** 관련 보조사업 중 최근 한 달 간 많이 검색된 보조금 사업은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이며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그 뒤를 잇는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19년도 기준 749.7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폭력예방 인프라를 구축하며 7.2억 원이 2019년도 사업비로 편성되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노인전문인력의 하교길 재학생 안전 및 비행청소년 선도 임무 수행을 위해 2019년 517.0억 원이 편성되었다.

주관 부처 : 고용노동부

1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 **사업 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
- **지원 대상** 50명 미만 고위험 사업장(제조·서비스업, 건설업 등)
- **보조율** 국고보조금 100%

당해 연도 사업비
(예산 현액)

749.7 억 원

주관 부처 : 여성가족부

2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 **사업 목적**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도모
- **지원 대상** 일반국민(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자 외)
- **보조율** 국고보조금 50%, 지자체부담금 50%

당해 연도 사업비
(예산 현액)

7.2 억 원

주관 부처 : 경찰청

3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 **사업 목적** 퇴직경찰관·교사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 학교 주변 통학로·놀이터·공원 등에 대한 집중 순찰을 통해 아동대상 범죄예방 및 비행 청소년 선도
- **지원 대상** 아동안전지킴이(노인전문인력)
- **보조율** 국고보조금 100%

당해 연도 사업비
(예산 현액)

517.0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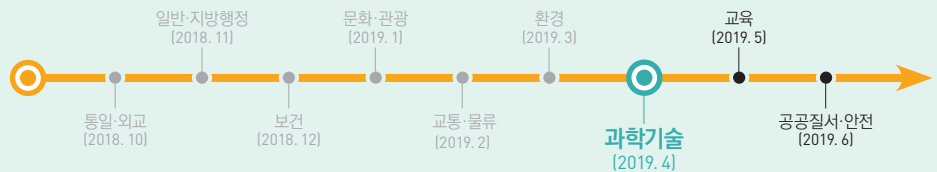
주: 2019년 4월 10일 검색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2. 분야별 통계: 과학기술 분야

이번 호에서는 15대 분야(예비비 제외) 중 **과학기술 분야**의 재정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구조와 추이

2019년 과학기술 분야의 총지출은 7조 3,029억 원으로 2018년(7조 568억 원) 대비 3.5%(2,461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1.6%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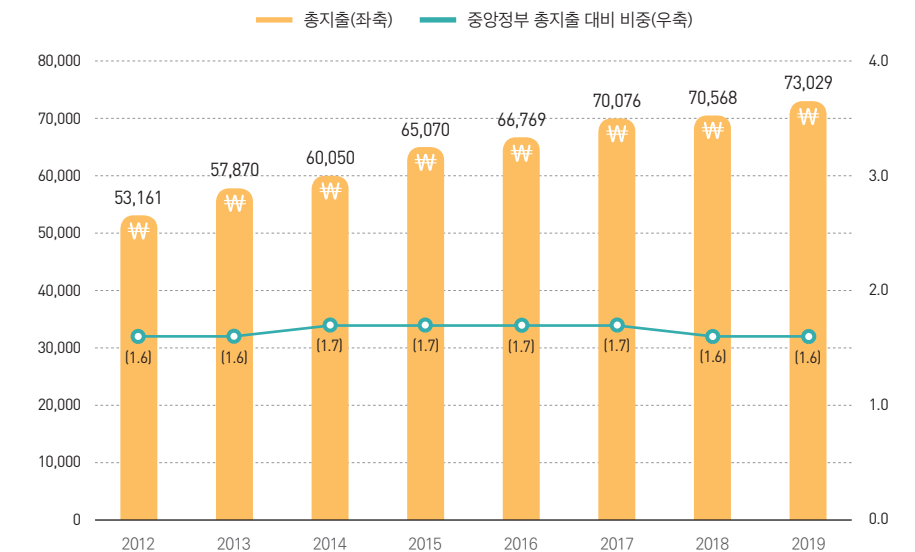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은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14년 1.7%를 보인 이후 꾸준히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부터 1.6%로 소폭 축소되었다.

2019년 본예산

7.3조 원

환경 분야 추이

(단위: 억 원, %)



주: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과학기술 분야는 일반회계 87.7%(6조 4,013억 원), 특별회계 7.8%(5,689억 원), 기금 4.6%(3,327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는 2019년 기준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은 원자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편성된다.

일반회계

6.4조 원

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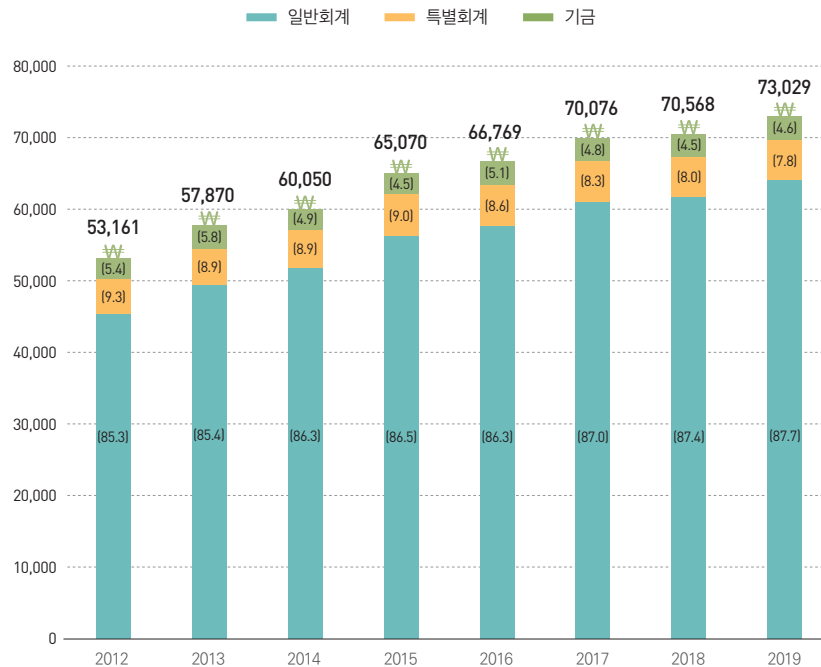
0.6조 원

기금

0.3조 원

과학기술 분야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억 원, %)



주 1)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 과학기술 분야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5,689억 원이다.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가 3,791억 원으로(과학기술 분야 특별회계 합계 대비 66.6%)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226억 원, 21.6%)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673억 원, 11.8%)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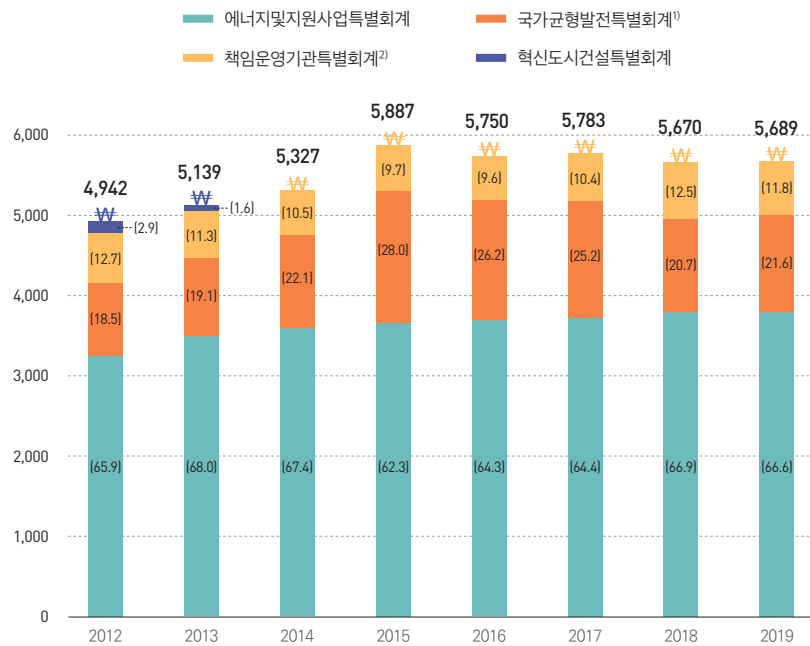
0.4조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1조 원

과학기술 분야 특별회계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4년까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포함

3)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4)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과학기술 분야 특별회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에너지및지원사업특별회계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근거해 1995년 설치되었다. 과징금·부과금·가산금 및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및 기업에 필요한 사업비, 출연금, 보조금, 전출금 등의 투자와 관련 사업 지원을 위한 용자 등의 사업으로 편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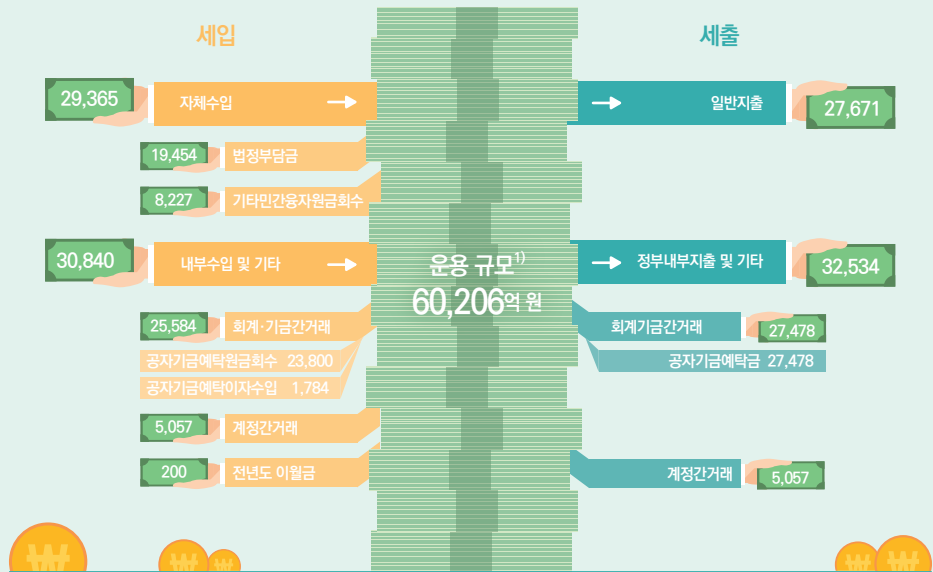
2019년 총계 기준 운용규모는 6조 206억 원으로 수입은 법정부담금 등의 자체수입 2조 9,365억 원, 공자기금예탁금 원금회수 등 내부수입 및 기타 3조 840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일반지출 2조 7,671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등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3조 2,534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 운용 규모
6.0조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 과학기술 분야 기금의 편성 규모는 3,327억 원으로, 원자력기금 2,630억 원(과학기술 분야 기금 규모 대비 79.1%)과 과학기술진흥기금(602억 원, 18.1%), 국유재산관리기금(95억 원, 2.9%)으로 구성된다.

원자력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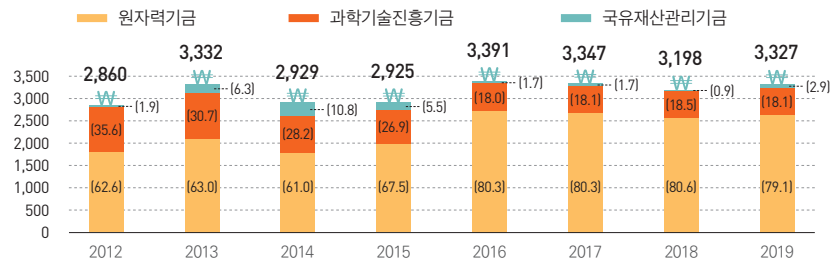
0.3조 원

과학기술진흥기금

0.06조 원

과학기술 분야 기금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과학기술 분야 기금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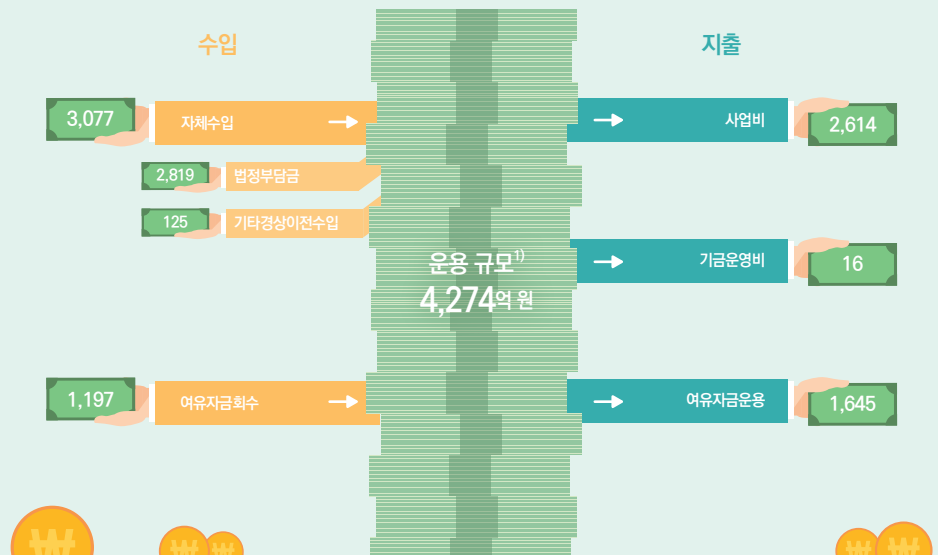
원자력기금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재원 확보와 안전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하여 1996년 설치되었다. 원자력기금은 부담금 및 가산금, 원자력연구개발 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과 업무 위탁에 따른 징수비용, 과징금 및 과태료, 정부 출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 원자력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원자력 이용시설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의 사업으로 편성된다.

2019년 총계 기준 운용규모는 4,274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3,077억 원, 여유자금회수 1,197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사업비 2,614억 원, 기금운영비 16억 원, 여유자금운용 1,645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금 운용 규모
0.4조 원

원자력기금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문별 재정 현황

2019년 기준 과학기술 분야는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연구개발,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으로 51.6%(3조 7,659억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연구개발 부문 38.7%(2조 8,297억 원), 과학기술일반 부문과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부문이 각각 6.6%(4,843억 원), 3.1%(2,229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지원

3.8조 원

과학기술연구개발

2.8조 원

과학기술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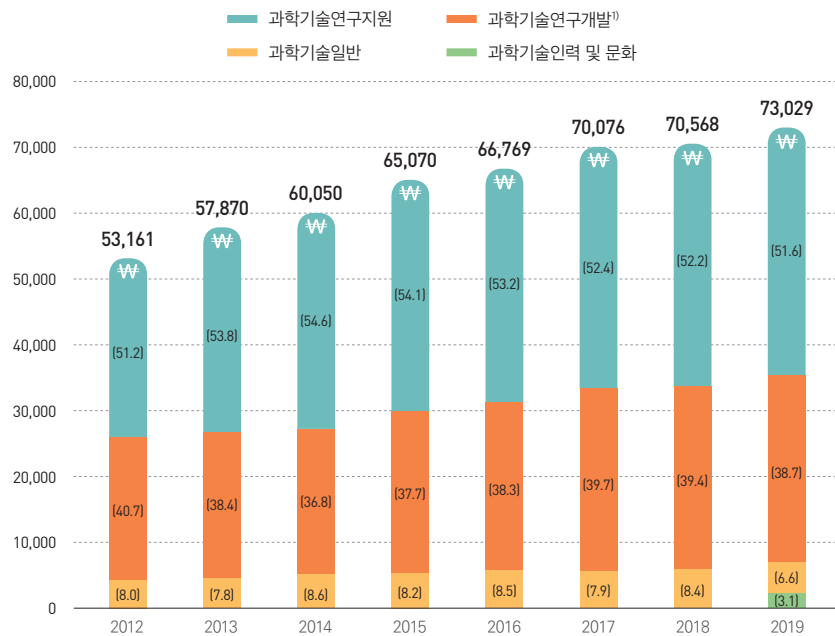
0.5조 원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

0.2조 원

과학기술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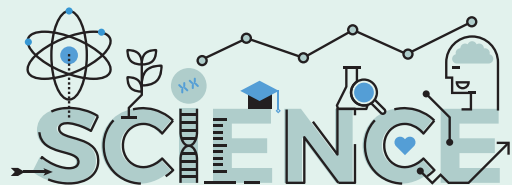
주 1) 2018년까지 기술개발부문

2)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은 2019년 과학기술연구지원, 과학기술일반, 과학기술인력 및 문화로 개편

3)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4)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과학기술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도 주요 사업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개인기초연구,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등이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혁신신약파이프라인발굴 사업 등이 있다.

개인기초연구 사업

9,796억 원

개인연구지원사업 및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등을 위한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2019년 9,796억 원을 편성하였다. 본 사업은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개인단위 연구지원을 통해 창의적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2,657억 원

신약, 줄기세포, 첨단의료기반기술 등 바이오 분야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2,657억 원)도 지속 추진한다. 바이오신약 장기사업, 신시장 창조 차세대 의료기기개발 사업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한 바이오분야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국가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

2,525억 원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 기능지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사업(2,525억 원)도 지속된다. 세계적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의 융합기반 마련을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사업

102억 원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사업(102억 원)은 친환경 Carbon-free 수소생산 및 고효율 수소 저장을 위한 차세대 핵심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새롭게 편성되었다. 향후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해 산업화가 가능한 Carbon-free 수소생산 기술 확보와 동시에 장기 리 운송이 용이한 고밀도 수소저장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혁신신약파이프라인발굴 사업

80억 원

글로벌 수준의 혁신신약 개발에 필요한 후보물질 파이프라인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신약파이프라인발굴 사업이 80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다. 국내 대학, 연구소, 국내 제약사가 기술이전을 하지 못해 개발 단계에 진입 전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국내 제약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업 수요가 반영된 초기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산·학·연·벤처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및 우수한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 달의 이슈 키워드 「독립운동」

정책여론수렴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독립운동’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임시정부’, ‘독립유공자’ 등이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정부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연관어

임시정부

상해

일본

독립유공자

훈장

김구

후손

보호

안중근

태극기

대한제국

광화문

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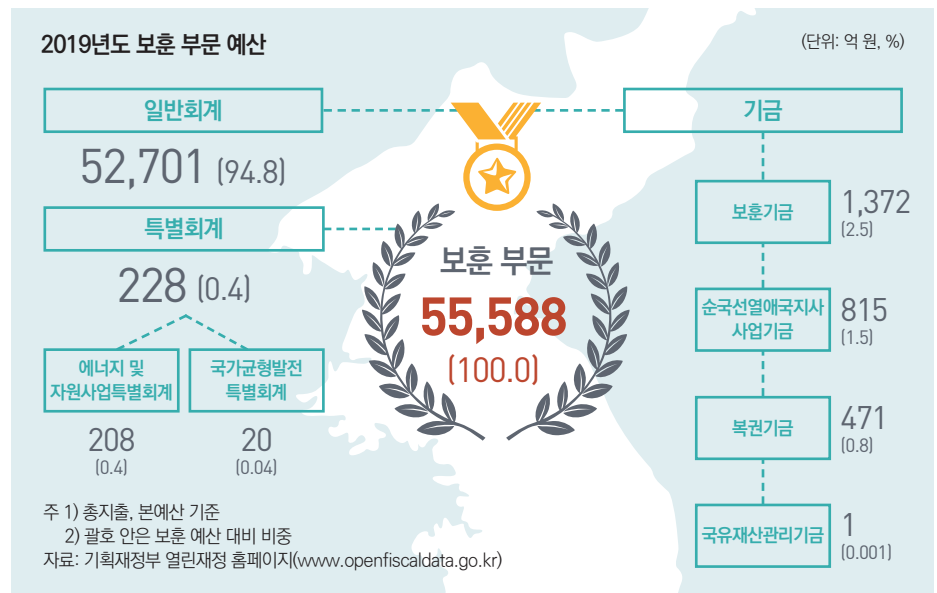
조선

탐골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9.3.12.),
수집기간: 2019.2.1.~2.28.

2019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 분야 내 보훈 부문은 총지출 469.6조 원의 1.2%인 5조 5,588억 원이다. 보훈 부문은 일반회계 94.8%(5조 2,701억 원), 특별회계 0.4%(228억 원), 기금 4.8%(2,658억 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특별회계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4%(208억 원)¹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04%(20억 원)²로, 기금은 보훈기금 2.5%(1,372억 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5%(815억 원), 복권기금 0.8%(471억 원), 국유재산관리기금 0.001%(1억 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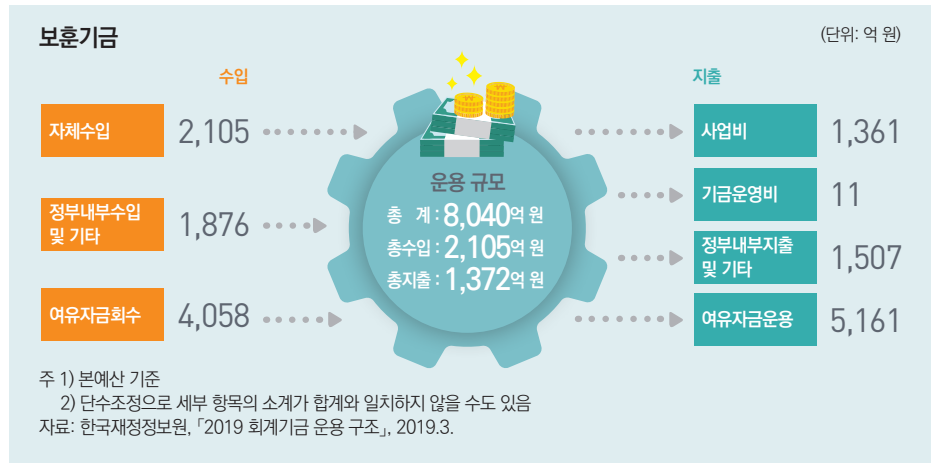
보훈기금 및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보훈 부문의 주요 기금에는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 있다. 보훈기금은 「보훈기금법」³을 근거로 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1981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부성금 등을 활용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지원, 재향군인회의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보훈기금의 운용구조를 보면 수입 부문은 자체수입 2,105억 원,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02억 원 등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1,876억 원, 여유자금회수 4,058억 원으로 구성된다. 반면 지출 부문은 복지지원 740억 원 등 사업비 1,361억 원, 기금운영비 11억 원, 복권기금으로의 전출금 5억 원 등 정부내부지출 및 기타 1,507억 원, 여유자금운용 5,161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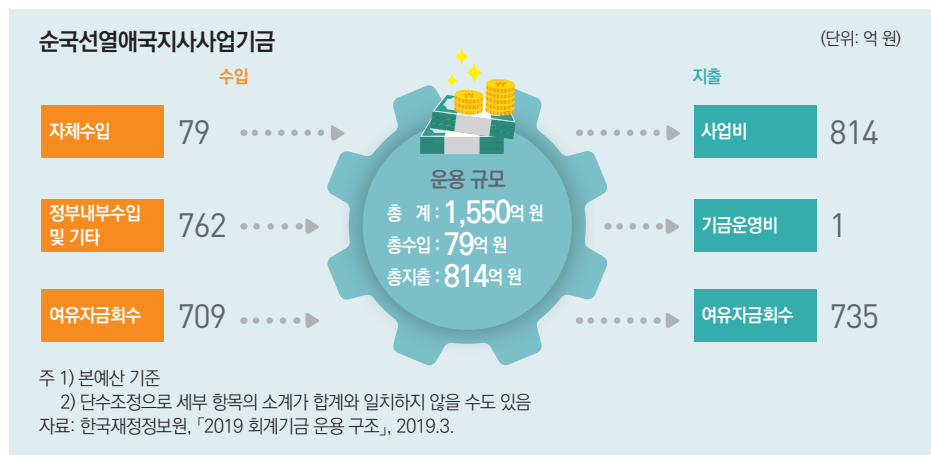
¹ 사업으로는 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 사업이 있다.

² 사업으로는 제주보훈업무지원 사업이 있다.

³ 1985년부터 「원호기금법」에서 「보훈기금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제로부터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1967년 설치된 기금이다. 주요 수입원은 출연금,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등으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2019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규모는 총계기준 1,550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79억 원,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762억 원, 여유자금회수 709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사업비 814억 원, 기금운영비 1억 원, 여유자금운용 735억 원으로 구성된다.



2019년 주요 보훈 사업

보상금 사업(2조 8,131억 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이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건국훈장을 받은 독

2019년 주요 보훈 사업		(단위: 억 원)
주요사업	규모	
1	보상금	28,131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790
	참전명예 수당	6,877
	무공명예 수당	666
2	보훈병원 진료	4,096
	위탁병원 진료	2,479
3	보훈요양원 건립	131
	복지시설운영 및 이용지원	78

주: 총지출, 본예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립유공자에게 월 최대 5,714천 원을 지급하는 등 훈격·급수별로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사업(790억 원)을 통해 특별예우금(월 최대 2,325천 원)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참전명예 수당 사업(6,877억 원, 월 30만 원) 및 무공명예 수당 사업(666억 원, 월 최대 38만 원) 등을 통해 각종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국가유공 상이자, 특수임무 부상자 등의 진료와 재활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 사업(4,096억 원)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에 헌신하다 신체적으로 상이를 입은 분들에게는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의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신체에 해를 당하지 않은 유공자이거나 그 가족,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특수질환이 있거나 보훈병원이 근거리에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 등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병원 진료 사업(2,479억 원)으로 전국 317개의 전문 또는 일반 병원을 위탁 진료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보훈요양원 건립 사업(131억 원)은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증가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영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요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현재 수원 보훈요양원 등 전국에 6개의 보훈요양원이 개원·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원주 보훈요양원을 2020년까지, 전주 보훈요양원을 2021년까지 개원할 예정이다. 요양시설의 이용지원은 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지원 사업(78억 원)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 보훈요양원 등 보훈복지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보훈요양원을 통한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보훈대상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요양시설의 이용도 지원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차입 추이 및 전망 :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



OECD는 매년 차입 전망 보고서(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를 발표한다. OECD 국가들의 예상 차입¹ 규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입, 채무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이 및 전망을 보여준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2월 발표한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를 통해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 채무 추이와 올해 전망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조현희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hyunheecho@kpfis.kr)

연도별 중앙정부 차입 예상 규모(borrowing needs)

재정 적자의 심화에 따라 OECD 국가들의 2018년 중앙정부 총차입(gross borrowing)과 순차입(net borrowing)² 예상 규모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OECD는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으로 채무 운용에 대한 부담 완화와 공공재정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차입 규모의 증가 추세가 201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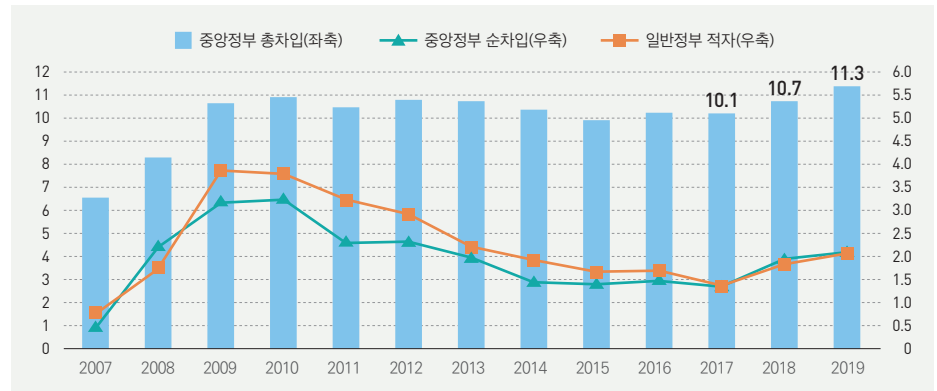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 총차입 규모의 합계는 2017년 10.1조 달러에서 2018년 10.7조 달러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11.3조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앙정부 순차입 규모는 금융위기 정책 대응으로 인하여 2010년 최대 규모에 이른 후 경기 침체 등으로 2017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¹ 당해연도의 채권 발행 규모를 의미한다.

² 당해연도의 채권 상환을 제외한 추가발행 규모를 나타내며, 양(positive)의 값을 가지는 경우 중앙정부 채무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를 의미한다.

그림 1. OECD 국가들의 차입 규모 추이 및 전망(2007-2019)

(단위: 조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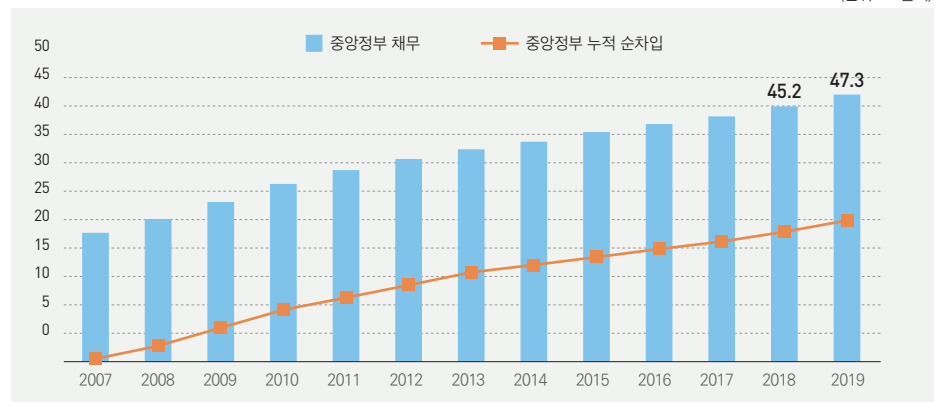


자료: OECD,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 2019. 2.

〈그림 1〉과 같이 중앙정부 순차입 규모가 꾸준히 양(positive)의 값을 기록함에 따라 OECD 국가들의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약 10년 만에 두 배로 상승하였다.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2007년 22.5조 달러에서 2018년 45.2조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OECD 국가들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2019년 47.3조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2. OECD 국가들의 채무 규모 추이 및 전망(2007-2019)

(단위: 조 달러)



자료: OECD,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 201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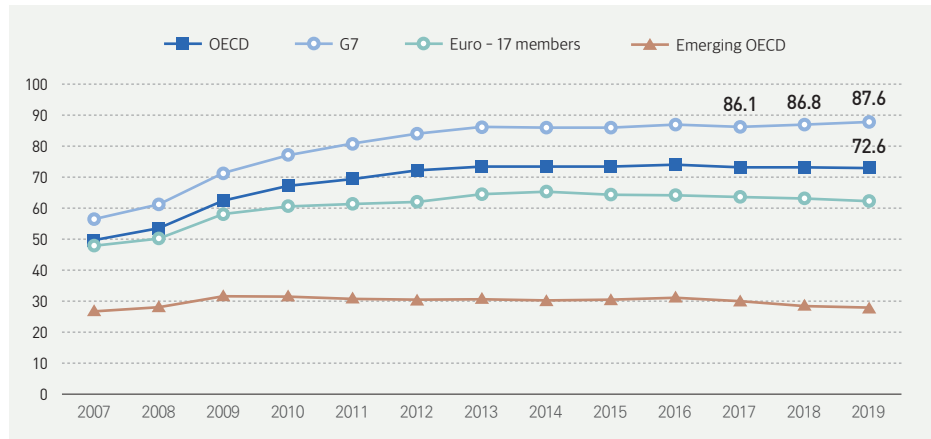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

최근 중앙정부 차입 예상 규모와 채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중앙정부 채무 비율은 유지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19년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72.6%로, 2017년,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는 G7 국가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6.1%에서 2018년 86.8%로 증가하였고, 2019년 87.6%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에 따라 차입 예상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OECD 국가채무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7년 20%의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은 2018년 35%를 차지하며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큰 비중을 보인다.

그림 3.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채무 비율 추이 및 전망(2007-2019)

(단위: %)



주: 1. OECD는 총 36개의 국가 포함(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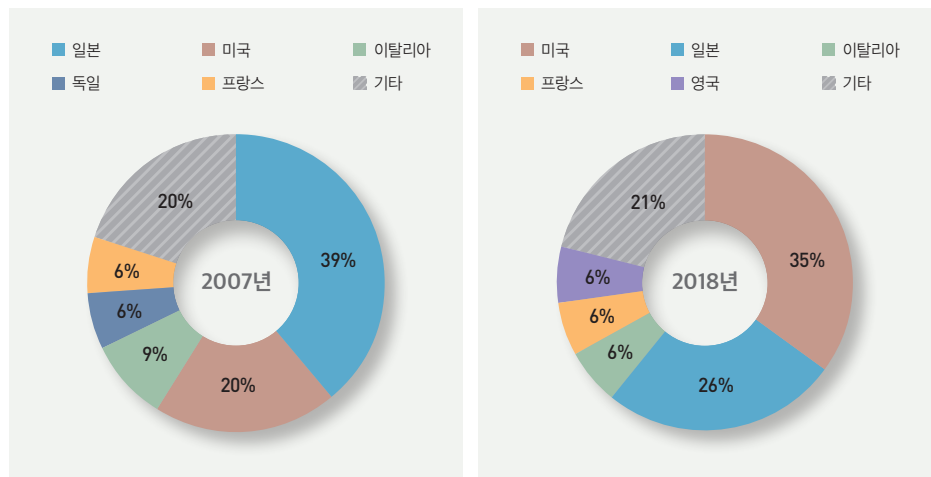
2. G7은 7개의 국가 포함(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3. Euro area-17 members는 17개의 국가 포함(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4. Emerging OECD는 5개의 국가 포함(칠레,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터키)

자료: OECD,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 2019. 2.

그림 4. OECD 국가별 채무 비중 비교



자료: OECD,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 2019. 2.



이자율-성장을 격차와 채무 추이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 국채(negative-yielding debt)를 발행할 만큼 낮은 수준의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낮은 이자율은 차입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장·단기 차입의 탄력적인 운용을 가능하게 하며 정부가 부채 비중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자율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낮은 상태로, 차입이 발생해도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증가하지 않아 차입에 대한 부담이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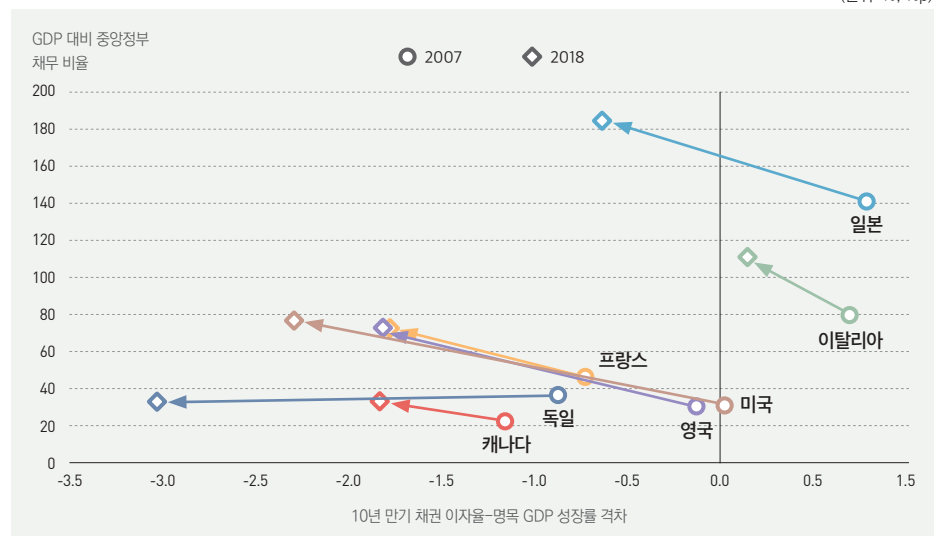
이렇게 이자율과 성장률의 관계를 통하여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평가할 수 있다. 이자율이 높을수록 차입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며, GDP 성장률이 높을수록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감소한다. 즉, 이자율-성장률 격차가 양(positive)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GDP 대비 채무 비율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림 5〉에서 2007년과 2018년의 G7 국가의 이자율-성장률 격차와 GDP 대비 채무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그 정도는 다르지만 모든 국가의 이자율-성장률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의 이자율-성장률 격차는 음(negative)의 값을 보였다. 2018년 기준 이탈리아의 이자율-성장률 격차는 2007년에 비해 비교적 줄어든 었지만, 여전히 10년 만기 채권 이자율이 명목 GDP 성장률보다 약 0.1bp 더 높다.

2007년 대비 2018년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살펴보면, 독일을 제외한 모든 G7 국가에서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G7 국가에서 이자율-성장률 격차가 감소했음에도, 이자율 감소에 의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으로 인하여 차입 규모가 GDP보다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이자율-성장률 격차의 감소와 함께 재정건전화 정책으로 점차 채무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 G7 국가의 GDP 대비 채무 비율과 이자율-성장률 격차

(단위: %, %p)



자료: OECD,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 2019. 2.

공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 2018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자 인터뷰 |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둔 것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과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제안자와 더불어 예산낭비 신고자와 예산낭비방지 관련 제안자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2018년도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글. 정재림 사진. 고인순

병무청 정보기획과 **변재호** 주무관의 제안

...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이용한
병역 민원처리 사례



병역의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고 민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병무청은 그동안 병역이행정보 제공에 문자서비스를 이용해왔다. 하지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늘어나면서 문자 발송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병무청의 연간 문자발송 비용은 1억 5천만 원을 웃돌아 예산 집행 한계에 도달했다. 비용 외에 또 다른 문제점도 있었다. 병역이행 안내를 위해 대량 문자를 발송할 때 스팸 또는 스미싱으로 오인 받아 병역의무자에게 정확히 안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문자를 송신한 후에 열람률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병무청 민원상담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고민하던 변재호 주무관은 택배회사의 '카카오톡 알림서비스'에서 답을 찾았다. 병무청의 병역안내 내용을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로 제공하여 문자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상세한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전달하게 된 것이다. 유희장비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추가비용 없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병무청의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시스템



의 도입은 변화한 병역의무자 세대에 맞춰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변재호 주무관은 민원처리에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로 비용과 모바일 기반의 이점을 꼽았다.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글자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었습니다. 대중성을 획득한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자들의 접근성 확보에도 용이합니다. 카카오톡은 ‘알림톡’이라는 비즈니스모델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무청의 민원서비스에 적용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병무청의 병역이행정보가 카카오톡으로도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지요.” 알림톡을 활용한 문자발송으로 공공요금 예산 1억 2백만 원(2017년 기준)이 절감되었다.

민원서비스의 모바일 기반을 다지면서 문자 알림외의 서비스도 생겨났다. 병역의무자들이 자주 묻는 민원 내용을 키워드 답변으로 제공한 것이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상담원을 통하지 않고도 손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변재호 주무관은 모바일 기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알림서비스와 질의응답 제공에 이어 통지서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병무청이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면서 다른 부처에서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유지장비와 발송서버를 구입하고 있지만, 행안부의 모바일메시지 서비스센터와 같이 통합센터를 구축한다면 모든 부처가 함께 사용하게 되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변재호 주무관의 제안은 타 부처로 확대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받았다. “예산성과금은 개인의 업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도 하고 타 부처로 확대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경험이었습니다.” 변재호 주무관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통 공공기관은 민간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에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더 좋은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예산을 절감하려는 간절함이 있다면 민간기술을 활용한 적극행정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방행정감사2국 박정현 감사원의 제안

...

임금체불 사업주의 숨겨진 재산확보 및 회수 사례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직자들이 발생하면서 파산이나 부도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성이 대두되자 국가는 임금채권보장사업을 시작했다. 임금채권보장사업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¹을 지급하고 지급한 범위 내에서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 적절한 법적조치를 통해 국고로 환수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악화되었다면 보유한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가져가 버린 경우가 많아 체당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한 사업주가 재산이 있는데도 국가가 이를 몰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재산을 숨

-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제46조 제1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의미한다.
- 2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 권을 의미한다.
- 3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되, 관념상으로는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 4 협동조합·공업조합·수출조합 등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출자자에 대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겨놓거나 가족 친지에게 몰래 넘기는 사해행위로
채당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박정현 감사원은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
태' 감사를 진행하던 중 이러한 채당금 회수 문제의
개선방안을 고심하게 되었다. 근로자의 임금과 퇴
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질권²·저
당권³ 또는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어떤 재산을 가지
고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최우선순위로
변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박정현 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채권
회수절차를 진행하며 채권추심 실무
자를 위한 편람을 확인하던 중 출자
증권⁴을 통해 채권보존조치를 했던 사
례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를 이용하면 사
업주가 보유한 출자증권, 질권 설정자료를 통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사업주의 재산확보가 가능
했다. 실제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임금체불로 3천여
만 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한 한 사업주의 서울보증
보험 질권을 확인한 결과 예금 11억 원을 가지고 있
었음을 알게 되어 채권보존조치를 한 경우도 있었
다. 이 같은 채권보존조치를 통해 2018년 6월 기준
으로 403억여 원이 회수 완료되었고 나머지 채당금
417억여 원(3억여 원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회수절
차가 진행 중이다.



“법 재정과 함께 추심이나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근
로복지공단에서 업무 시스템이나 편람을 만든다면
재산조회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채당금 회수율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박정현 감사원은 ‘실업
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태’ 감사 이후 감사 사항
이 국가의 수입증대에 해당해 예산성과금을 신청하
게 되었다고 밝혔다. “처음에는 예산성과금과 관련
하여 막연하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로만 알

고 있었는데 감사가 끝나고 동료 직원들의
권유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성
과금을 염두에 두고 했던 감사는 아니
었지만, 국민과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되고, 예산성과금까지
받게 되어 특별한 의미로 남을 것 같
습니다.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에 선정되
어 앞으로의 공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자
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현 감사원은 통상적인 업무 집행에서 벗어나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해결책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집과 같은 홍보가 지속된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산절감의 동기유
발이 될 것이고 국민에게는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꼼꼼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부터 심사까지의 절차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신청된 건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
원회는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시기	심사시기	지급시기
1월	2~5월	6월 말
7월	8~11월	12월 말



재정수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살림을 하다 보면 어떤 달은 돈이 남는가 하면, 또 다른 달은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월급이 남으면 저축을 늘리고 비상금도 만들 수 있지만, 돈이 부족한 달에는 친구에게 빚을 져 생계를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입 내에서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국가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도 때로는 수입에 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기도, 적게 지출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합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재정수지가 플러스일 때는 재정수지 흑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 재정수지가 마이너스일 때는 재정수지 적자라고 하죠. 또한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정부 수입과 지출이 같음을 의미합니다.

재정수지는 포함되는 항목이나 포괄범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수지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고, 이들 회계·기금 간 거래·차입·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말합니다. 즉, 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를 뜻합니다. 통합재정수지는 포괄적인 재정활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활용됩니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는 미래에 지출되어야 할 자금 등이 포함되어 당해연도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합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합니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는 이유는 해당 기금들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지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은 65세 이상(현행)이 되면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학연금도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퇴직 이후 65세 이상(현행)이 되면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¹는 정부가 '미래에 지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재정여력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31.2조 원으로 흑자를 나타낸 반면, 관리재정수지

¹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안착되어 가는 단계로, 보험료 수입이 보험금 지출보다 많아 흑자를 기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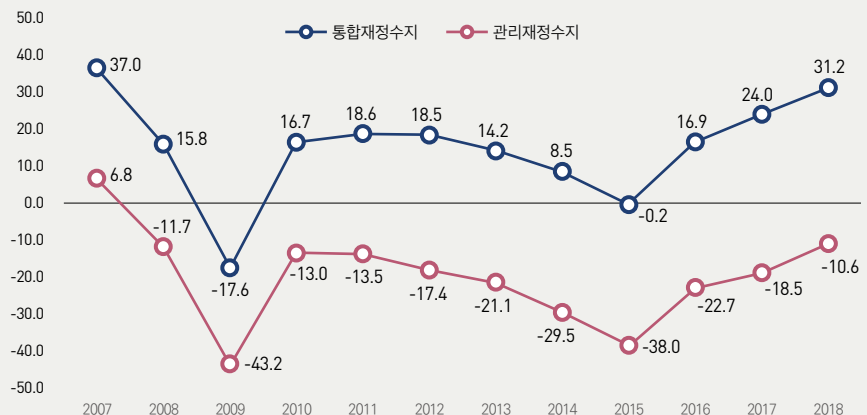
는 -10.6조 원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같은 해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1.7조 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정흑자를 기록했다고 할 수도, 재정적자였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두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지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재정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GDP 대비 비중으로 본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18년 기준 GDP 대비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양호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상황을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독자적 지표로, 국내에서만 활용되어 국가 간 비교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행히 2015년부터는 기업의 실적 개선, 수출입 증가 등 경기여건 개선에 따른 세수 실적 증가로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수입에 알맞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 씹씹이가 적절한지 궁금하다면, 재정수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조 선 에 도 파 산 제 도 가 있 었 다 ?

글 이성주 「엽기조선왕조실록」 저자, 문화 칼럼니스트

四介松都治簿法

조선시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선비들이 공맹의 도리를 말하고, 조정에서는 봉당으로 나뉘어 장례식 때 상복(喪服)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로 싸우는 거로만 알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선 역시 사람 사는 곳이었다는 걸 잊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경제가 돌아야 하고, 경제가 돌아가려면 상거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상거래를 주관하는 기업(혹은 상단)이 있어야 한다. 이 기업이 활동하려면 경영의 언어인 ‘회계’가 존재해야 하고, 각종 금융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조선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나?”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조선 역시 사람 사는 곳이었다. 이런 금융제도의 발달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는 개성상인이라 불리는 송상(松商)들이다. 고려시대에 개성은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 자연히 상거래가 활성화됐고, 개성을 본거지로 활동하던 송상들은 각종 금융제도와 회계체계를 발전시켰다.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사개송도치부법(四介松都治簿法)이 바로 그것이다(소설 ‘베니스의 개성상인’에서도 이 사개송도치부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개부기(四介簿記), 개성부기(開城簿記)라고도 불리는 이 복식부기는 송상뿐만이 아니라 평양의 유상(柳商), 의주의 만상(灣商), 동래의 내상(萊商), 한양의 경강상인(京江商人) 등 조선 5대 상단이 모두 사용한 장부 기입법이다.

이 장부는 봉차(奉次: 자산), 급차(級次: 부채), 이익, 손해 4종류로 이루어져 사개(四介)로 불렸는데, 오늘날의 복식부기와 놀랍도록 유사하다. 이 유용성 덕분에 20세기가 시작될 무렵까지 조선 땅에서는 사용됐을 정도다. 이런 복식부기 뿐만 아니라 어음을 만들고 활용했던 것도 송상이다. 이들은 환간(換簡)이라는 어음을 만들어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신용대출도 만들어서 사용했다. 바로 시변제(時邊制)다.

이 신용대출은 오늘날의 신용대출과 상당히 유사했는데, 환도중(還都中)이라는 금융중개인을 통해서 돈을 빌리려 하는 이에게 자금을 빌려줬다. 여기서 금융중개인인 환도중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신용보증을 해준다. 재미난 건 당시 이 신용대출은 돈을 빌리려는 차입자의 신원이나 신상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거다. 오로지 금융중개인인 환도중의 보증만을 믿었던 거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상환률과 이자율이다. 얼핏 생각해 보면, 신용대출이기에 상환을 하지

時邊制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 같은데, 돈을 빌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빚 변제를 마쳤다는 거다.

“중개인인 환도중이 빚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한정해서 보증을 섰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자율 역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당시 시변제(時邊制)의 이자율은 오늘날로 치자면, 연리 12% 정도였다. 오늘날과 비교해도 과히 높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자율이다.

자, 이렇게 대출도 있고, 중개인도 있다면 부도와 파산이란 제도도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돈을 빌렸는데, 이걸 변제할 능력이 없다면? 부도 처리 되거나 파산을 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에도 이런 파산제도가 있었을까? 당연히 존재했다. 다만, 그 파산 방법이 약간 ‘낭만적’이었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다. 바로 『판셈』이다. 판셈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면,

“빚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의 전부를 내놓아 나누어 가지도록 하다.”

라고 나와 있다. 요즘도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는 빚 처리 방식이다. 빚을 갚고 싶어도 더는 갚을 돈이 없으니, 자신의 재산을 모두 쏟아놓고, 채권자들에게 내놓는 거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알아서들 나눠서 챙겨가세요.”

이렇게 해서 빚 변제에 들어가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다 갚을 수 있었다면, 파산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요즘에는 남아 있는 빚이 꼬리표처럼 붙어 가거나, 아예 개인파산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데, 판셈의 경우가 이와 유사하다.

판셈을 결심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판셈을 고지한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이들 앞에 남은 재산을 다 내놓는다. 그럼 채권자들은 저마다 남은 재산을 가지고 셈을 한다. 문제는 이다음인데, 이렇게 처리하더라도 부채는 분명 남는다. 이 ‘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다. 여기서 조선인들은 순박함(?)과 사람 사이의 정(情)을 보여준다.

“오죽하면 판셈까지 했을까? 이 정도로 끝냅시다.”

판셈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내놓는 것이고, 더 털어봐야 나올 게 없다는 판단 하에서 꺼내든 최후의 선택이다. 그렇기에 채권자들은 이 정도에서 모든 채무를 정리해 주는 걸로 합의를 본다. 낭만적이라고 해야 할까? 하긴 오늘날에도 개인채무조정 등을 통해서 빚을 탕감해 주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 특이하다고만 할 순 없다.

안타까운 건 시대를 초월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소수’는 있다는 점이다. 판셈의 경우 채무자들에게 재산을 내놓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뒤로 빼돌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예 고의적으로 판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심한 경우 상습적...아니, 습관적으로 판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약간의 재산을 내놓고, 돈이 이것밖에 없다고 버티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유혹. 채무자로서는 귀가 솔깃해 지는 이야기일 거다. 그러나 상거래는 기본은 신용이란 게 동서고금의 진리다. 한 번 이런 식으로 신용을 무너뜨린 사람이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 판셈은 최후의 최후에 수단이라는 걸 당시 사람들도 잘 알고 있었다.

판셈을 결심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판셈을 고지한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이들 앞에 남은 재산을 다 내놓는다.
그럼 채권자들은 저마다
남은 재산을 가지고 셈을 한다.



‘선량한 정책의도’와 ‘더딘 재정발달’의 딜레마에 처했던 조선

글. 김동욱(kimdw@hankyung.com)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정도전은 1394년 집필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장인(匠人)과 상인에 대해선 아주 적은 분량밖에 할애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의 기반인 농업이 아닌 ‘부차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또 상공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생겨선 안 된다는 유학사상에 충실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조선은 정도전의 구상처럼 ‘무본억말(務本抑末·근본에 힘쓰고 말업을 억제함)’이라는 구호아래 건국 초기부터 상업을 억압했다. 모시와 비단의류, 신발, 가구, 부엌기구, 가죽제품, 벽돌, 종이, 자기, 무기, 갑옷 등을 만드는 직업적인 장인은 언제나 소수였다. 제철과 야금 인력도 극소수로 제한됐다.

전국에서 중앙정부에 고용된 장인 숫자는 6,600명가량으로 법률로 제한됐다. 중앙에 130개 분야에서 2800명 정도가 배치됐고 지방에는 27개 분야에 3,800명이 할당됐다. 장인들은 중앙에 편중됐고, 주로 지배계층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주로 생산했다.

지방에선 노동 분화가 별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장인들이 무기, 농기구, 종이, 베개 등을 생산했다. 지방에 등록된 장인 중 3분의1은 경상도에 거주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마을별로 살펴보면 한 마을이나 지역에서 두세 명을 넘지 못했다. 종이 생산으로 유명했던 전라도 전주와 남원은 해당 기술 장인이 각각 23명씩 있었다. 경주, 상주, 안동, 진주 같은 큰 도시에서도 대장장이나 야금장이는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았다. 감영에는 12



명 안팎의 '많은' 장인이 배속됐다.

조선은 건국 초부터 비단산업을 증진시키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되지 못했다. 높은 품질의 비단제품은 왕조가 끝날 때까지 중국에서 수입됐다. 면화씨는 1364년(공민왕 13년)경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지만 1460년대까지 면포는 의류를 만드는 주요 소재가 되지 못했다. 광업 역시 자진폐업 하다시피 했다. 금, 은, 납, 철, 구리, 유황 등이 주요 채굴 광물자원이었지만 주요 활동은 중국에 조공하기 위한 금과 은을 생산하는 데 집중됐다. 이마처도 “조선에선 금, 은이 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조공부담을 피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귀금속 생산량은 많지 않았고 정부에서는 금 수출을 제한했다. 개인적으로 소유한 물량을 몰수하기도 했다.

1429년 명나라로부터 금, 은의 조공을 면제받은 뒤에도 “중국이 다시 조공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금 채광은 확대되지 않았다. 광업이 확대되면 농업 노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배경에 있었다. 결국 풍년이 든 해에 5~6일 정도만 광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조선은 일본에 금 수입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됐다.

1430년(세종 12년) 무렵 전국에는 66개의 철광과 17개의 제련소가 있었지만 철광석 채광 활동은 농한기에도 규제됐다.

구리채광은 1423년(세종 5년) 태종조에 시작된 저화(지폐) 유통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전을 주조하기로 결정하면서 촉진됐다. 하지만 그레섬의 법칙이 작동하면서 동전이 화폐가치 하락 탓에 유통되지 않았고, 화폐주조도 1445년(세종 27년) 막을 내렸다.

저화는 초기부터 도입 의도와 달리 골칫거리가 됐다. 1402년(태종 2년) 정월 저화가 처음 보급될 무렵 저화가격은 1장당 5승포1필 내지는 미(米) 2두로 책정됐다. 하지만 불과 10여년만인 1415년(태종 15년) 6월경이 되면 저화가격은 1장당 미 2승에 해당할 정도로 폭락했다. 원재료인 종이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었던 탓이 컸다.

세종조에도 저화가격 하락은 이어져서 1422년(세종 4년) 12월에 저화3장으로 겨우 미 1승을 살 수 있을 지경이 됐다. 정부는 저화유통을 강제하기 위해 오승포(五升布)로 대표되는 물품화폐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중죄에 처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결국 조선 정부는 1419년(세종 원년) 4월 태환보증을 위해 군자감의 미두 600석을 방출한 것을 시작으로 1421년(세종 3년) 6월에 1만석, 1423년(세종 5년) 정월 3000석을 방출하는 등 국고물자를 내놓으며 화폐가치 안정에 나섰지만 또 실패했다. 정부의 화폐보급 의지와 달리 민간의 유통 상황은 극히 부진했던 탓이다.

종이 화폐가 종잇조각이 돼버리면서 '동전'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결국 1425년 전국 폐사(廢寺)에서 수합한 동과 각 도에서 거둬들인 동을 원료로 하는 주전 사업이 이어졌다. 동전 1문(文)의 가치를 미 1승으로 해 기존 저화와 달리 소재거래에도 쓸 수 있게 했다. 동전전용 유통방침을 정해 저화 1장을 동전 1문의 비율로 교환하기도 했다.

동전사용을 강제하기 위해 시전의 부상대고(富商大賈, 많은 밀천을 가지고 대규모로 장사하는 상인)나 다양한(諸色)공장 가운데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자에게 장(杖) 100대, 가산물

조선 후기의
각종 세정,
재정상 문제의
근본 원인도
뒤쳐진
경제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수 등을 규정하기도 했다. 백성들의 일상적인 두승 이하 '소액거래'에도 반드시 동전만 쓰도록 했다.

하지만 동전 사용이 공포된 지 불과 3개월만인 1425년 5월에 시중의 백성들은 동전이용을 기피했다. 동전가도 하락해 미 1승에 전 3문으로 거래되는 지경이 됐다. 최초 화폐발행 3개월 만에 화폐가치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동전가격이 하락하면서 동전을 녹여 동그릇(銅器)을 제작하는 자도 늘었다.

원활한 동전 유통을 위한 구리 채굴양도 부족했다. 동전통용이 결정된 뒤 전국적으로 동광산 개발이 추진됐지만 산출량이 미미했다. 1427년(세종 9년) 동전을 주조하기 위해 경상도에서 3개월간 채굴한 동의 양이 300근에 불과했던 반면 이듬해 정월 일본 사신이 한 번에 가져온 동철은 2만 8000근에 달했다.

결국 1445년 10월 동전도 포기하고 저화를 다시 사용하는 방침을 강구하면서 세종의 동전유통 실험도 끝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구리 채광은 무기재료를 얻기 위한 명목으로 그저 명맥만 지속했다.

상업에 대한 국가통제도 건국 초기부터 주요 국정과제였다. 건국과 함께 조선 정부는 도성인 한양에 관에서 허가를 낸(官許) 상업인 시전을 뒀다. 이를 통해 도성상업과 한양을 거점으로 진행되는 전국의 교환과정을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오늘날 종로1~3가와 남대문로1가 일대에 시전을 조성해 옛 도읍인 개경의 시전상인과 부상대고(富商大賈)를 강제로 이주시켰다. 대상인인 이들을 매개로 도성과 전국의 상업을 파악해 관장하고자 한 조치였다.

1420년(세종 2년)에는 시전에 입주하지 않고 물가를 조정하는 도성의 공상(工商, 간단한 수공품을 직접 만들기도 하면서 판매하던 상인)들을 판매물종에 따라 모두 시전에 분산편입 시켰다.

시장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개입도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도성 내 시장에서 이른



바 ‘간활범법자(奸滑犯法者)’를 단속하는 조치가 줄곧 이어졌다. 국초부터 도성상업 전담 규찰기구인 ‘경시서(京市署)’를 두기도 했다. 1437년(세종 19년) 2월 의정부는 “쌀을 파는 자가 이익을 취하려고 서로 다투며 사람을 속여서 사는 데는 큰 말과 큰되를 쓰고, 파는 데는 작은 말과 작은되를 쓴다”며 “혹은 모래와 돌을 섞어 팔고서는 곧 숨긴다”고 중점 단속할 것을 청하기도 했다.

주요 물품가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시중 물가상승은 국초부터 조선 정부의 주요 현안이었다. 이에 경시서를 중심으로 화폐로 쓰이는 포목(布貨)과 가죽(皮), 철, 의복처럼 가격의 등락 폭이 크지 않은 품목은 일정한 가격을 매기고 수입품인 동납(銅鑲), 단목(丹木), 약재 등은 경시서가 호조에 보고해 수시로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가격이 조석으로 변동하는” 품목인 유채(蔬菜), 어육(魚肉), 세쇄식물(細碎食物) 등은 경시서에서 시가를 매기도록(市准)했다.

정부가 시전과 도성상업계의 도량형 사기, 물가조종, 강제로 물건을 떠넘기는 행위 등에 대해 ‘금란(禁亂)’을 명목으로 단속 위주로 처벌했던 것이다.

지방 상인인 행상의 활동에도 정부가 감시의 눈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전업 상인인 행상을 국가가 파악해 한성부와 소속 주현에 각각 적(籍)을 비치해 등록토록 했다. 그리고 그들의 상업 활동에 대해 상세를 징수하고 여행허가증인 행장(行狀)을 발급했다. 세종 11년에는 군사적 이유 때문에 삼남지방 이외에 황해, 강원, 평안, 함경도를 왕래하는 행상들에게 행장을 발급하지 않고, 이들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 제조업과 상업을 통제했던 조선은 왕조시대 내내 ‘정책의도’가 비교적 충실하게 달성됐다. 그 결과는 저조한 상업경제 발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해방 이후 수많은 학자들이 ‘자본주의 맹아론’ 등 내재적 발전의 모습을 찾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만약 당시로선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을 상업과 제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영향 등으로 조선의 경제발전 수준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앞서 있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조선 전기부터 지체된 경제발전의 모습은 ‘대항해 시대’ 이후 서구와의 접촉도 지리적·정치적 이유로 한계가 분명했던 까닭에 약점이 더욱 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제발전이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재정의 규모, 재정정책을 운영하는 기술도 신속하게 발전하지 못했다. 조선 후기의 각종 세정, 재정상 문제의 근본 원인도 뒤쳐진 경제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를 되돌아 볼 때 아쉬움이 적지 않은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참고 문헌

- 제임스 B. 팔레. (2008). 『유교적 경제론과 조선의 제도들 - 유형원과 조선 후기 1』, 김범 옮김, 산치럼.
- 박평식. (2009). 『조선전기 교환경제와 상인연구』, 지식산업사.

참고사이트

- 조선왕조실록국역온라인서비스(<http://silok.history.or.kr>)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교보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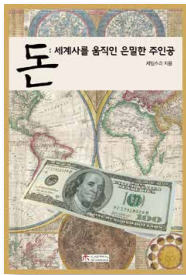


저자 기획재정부
출판사 진한엠앤비
발간일 2019년 02월

나라살림 예산개요(2019)

예산안 시정연설부터 재정 전반 통계 정보까지

이 책은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다룬 정부간행물로서 총 302페이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책자의 1부에는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안 설명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확대, 혁신성장 지원, 가계소득 향상 및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다. 2부에는 재정 운용 여건과 규모,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상세히 담았다. 2019년 나라살림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중점추진과제 예산을 상세히 기술하여 재정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하는 전개다. 마지막 3부에서는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 제임스리
출판사 시커뮤니케이션
발간일 2019년 03월

돈: 세계사를 움직인 은밀한 주인공

역사를 움직이는 돈과 경제 에피소드

이 책은 바로 그 '돈'의 관점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세계사를 서술한다. 알고 보면 세계사의 숨은 주역은 '돈'이었을 때가 많다. 과거를 돌이켜 지금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역사책의 묘미라면, 이 책은 더욱더 역사책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과거에 돈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 책을 보면 그 영향력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그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모양이 별반 다르지 않고, 투기가 역사 속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이 책을 통해 살펴보면 요즘과 다르지 않은 모습에 놀랍기도 하다. 이 책은 짧게, 그러나 자세하게 인류의 역사를 '돈'을 주제로 읽어 내려간다. 이 책을 읽으면 역사 상식과 경제 용어와 상식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김광석
출판사 지식노마드
발간일 2019년 04월

경제읽어주는 남자의 디지털 경제지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현장을 가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즉 디지털화를 뜻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대한 물결이 비즈니스와 삶을 바꾸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디지털'은 개념 도입 단계에서 '디지털화'로의 도약을 본격화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디바이스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일상의 플랫폼, 패러다임이 되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공부하고 영화를 보며 금융거래를 하며 쇼핑을 한다. IT 기반의 생활방식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이다. 이 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5가지 양상을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주고 각 산업 분야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세밀히 관찰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전략으로서의 디지털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저자 고석군
출판사 책들의정원
발간일 2019년 04월

편의점에 간 멍청한 경제학자

나쁜 녀치의 모든 것을 파헤치다

편의점에서 2+1행사, 대형 마트에서 5분 특가 제품 등. 필요한 소비라고 생각하며 해왔던 행동들에 소비가 늘어난다. 이런 행동들이 정말 온전히 내 의지로 행해진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하지만, 교묘하게 선택을 유도하는 기업 전략이 우리가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만든다. 이 책은 편의점, 대형 마트, 영화관, 카페 등 우리 일상 속 매우 가까운 곳에 존재하지만 모르고 지나쳤던 것들에 어떠한 녀치가 숨어 있는지 그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넋지》의 저자인 리처드 탈러의 '넋지이론'을 중심으로 기업의 '넋지 마케팅'을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은 소비에 대한 시야를 넓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한국재정정보원·
한국행정학회
업무협약 체결 및 포럼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과 한국행정학회(회장 김동욱)는 재정정보 분석 기반 확대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3월 28일(목)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재정 분야에 대한 분석 성과 향상 및 학술발전, 재정 정보 활용방안 모색,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 공동 추진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통계 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한
한국재정정보원·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한국재정정보원(원장 김재훈)과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2019년 4월 11일(목)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정분야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의 공유 및 상호의견 교환, 재정분야 신규 통계개발 등 공동연구 및 지원, 재정분야 통계 작성 기법과 관련된 연구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e나라도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순회교육 실시



방법과 업무처리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e나라도움 운영본부에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과정 및 매뉴얼, FAQ에 반영함으로써 e나라도움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포털 <열린재정> 활용해 논문 쓰세요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3월 29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린재정> 체험존을 운영했다. <열린재정>은 우리나라 재정통계와 맞춤형 정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는 재정정보 공개포털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을 개최 중이며, 4월 말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응모가 가능하다. 논문공모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5월 초 자료 활용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실제 논문은 9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openfiscaldata.go.kr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공무원 경험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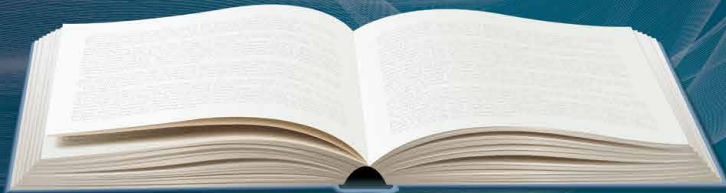
한국재정정보원은 4월 12일(금),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직원 18명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2명을 대상으로 dBrain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경험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는 한국어-인니어 순차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dBrain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법적제도, 데이터 보

안관리 체계, 열린재정 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고갔다.

인도네시아 국가감사위원회 연수단은 4월 8일(월)부터 13일(토)까지 총 6일간 한국에 체류하였으며, 감사역량강화 교육 및 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제1회 「열린재정」을 활용한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

재정정보 공개포털 「열린재정」은 재정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160여종의 재정통계를 공개하고 사용자별 맞춤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모 분야

「열린재정」 포털 공개자료를 활용한 경제·재정·행정·통계 등 분야 학술·정책 논문
- 재정사업 효과분석, 자원배분의 적정성, 재정운용의 효율성·형평성 분석 등
- 재정통계 분석 방법론·모형개발 등

시상 내역

구 분	상 금	편 수
최 우 수 상	500 만원	1편
우 수 상	300 만원	1편
장 려 상	100 만원	2편

※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응모 자격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대학원생의 경우 수료자 가능)

※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응모자 포함 4인까지 가능하며, 지도교수 공저 시 반드시
주저자가 대학(원)생이어야 함

응모 방법 및 일정

- 참가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년 4월 1일(월) ~ 4월 30일(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①참가신청서, ②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이메일 thesis@kpfis.kr / 문의 02-6908-8569
 - 「열린재정」 자료 활용 설명회
 - 일시 : 2019년 5월초 (추후 안내)
 - 대상 : 논문 공모전 참가자
 - 내용 : 「열린재정」, 재정정보·통계 자료 소개 및 활용방법 설명
 - 논문 제출마감 : 2019년 9월 30일(월), 18:00까지
 - 결과 발표: 2019년 10월 말
 - ※ 결과발표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상세 내용은 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 또는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독자 QUIZ

아래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국가가 때로는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하기도,
적게 지출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듯 정부가 거둬들이는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일컫는 재정 용어는?

-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_ narajaejung@kpfis.kr(이름 필수 기입)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_ 2019. 04. 30. ~ 2019. 05. 20.

3월호 애독자퀴즈 당첨자 발표

— ☆ 퀴즈 정답 ☆ —
국유재산

— ☆ 상품 당첨자 ☆ —
강현숙 황인성 이정숙 유재범 전경옥 조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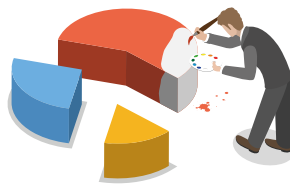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티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개인 정보 이용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자: 한국재정정보원, 경성문화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월간 「나라재정」 이벤트 당첨자 경품 제공
-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용: 이름,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약일로부터 경품 제공일까지

※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